

Chapter 1.

5대 아젠다 25대 핵심과제

Chapter 2.

소상공인 분야별 85대 정책과제

KFME 소상공인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21 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An abstract geometric composition featuring a large brown semi-circle at the top left, a smaller brown quarter-circle at the top right, a thick yellow diagonal bar crossing the center, a dark grey vertical bar on the right, and two grey rectangular blocks at the bottom left and bottom right.

소상공인 분야별 85대 정책과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776만 대하민족 수산단이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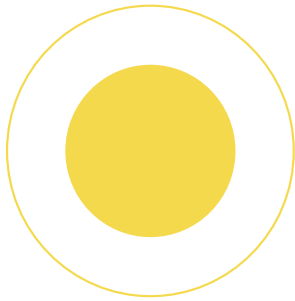
Chapter 1.

5대 아젠다 25대 핵심과제

Chapter 2.

소상공인 분야별 85대 정책과제

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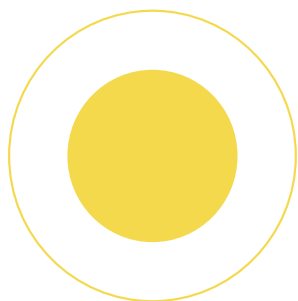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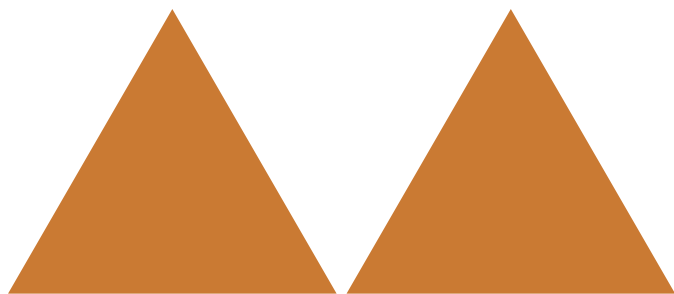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776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힘

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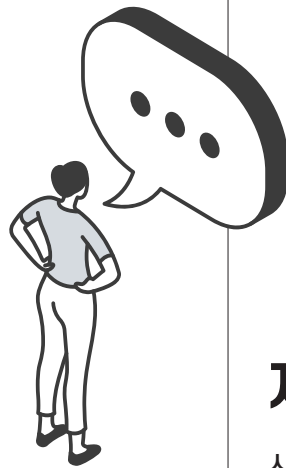
들어가며. 현재 소상공인 처지는? 4

Chapter 1. 5大 아젠다 25대 핵심과제 7

Chapter 2. 소상공인 분야별 85대 정책과제 43



현재 소상공인 처지는 ?



위기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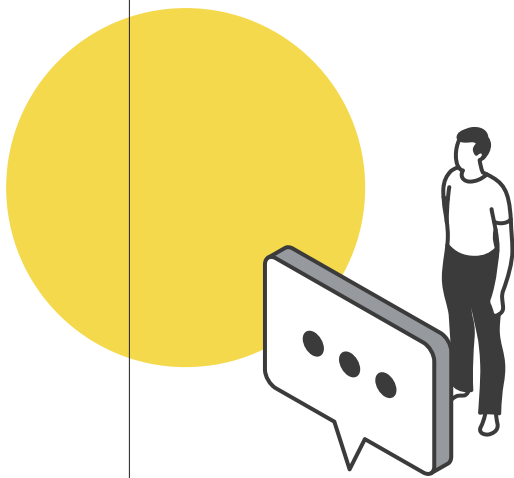
경영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였는데,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충족하려면
경영상태가 좋아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해주세요

(경기도 소재
학원 운영 중인 김모씨)

지원·인프라

신용점수 평가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을
별도 설립하여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이 필요합니다.

(전북 소재
식당 운영 중인 이모씨)



법·제도개선

빠 빠지게 일해서
플랫폼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제발 플랫폼의
수수료 통제를
해주세요.

(서울 소재
식당 운영 중인 정모씨)

사회안전망

창업 전 정확한 정보와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듣고 배우며,
현실에 맞는 교육과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충북 소재
미용실 운영 중인 서모씨)

혁신성장기반

소상공인 정책
정보 확인의
어려움으로 원스톱지원
플랫폼이 필요하며,
고령화된 소상공인의
정책 및 네트워크 교류를
위해
광역단위 소상공인회관
또는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경남 소재
도소매업 운영 중인 김모씨)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Chapter

1

5大 아젠다 25대 핵심 과제



제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5大 아젠다 25대 핵심 과제

위기 극복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턱 어라운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 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 ②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완화(전기계약종, 수도요금감면)
- ③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 ④ 소상공인 금융지원(채무조정, 장기분할, 희망통장) 강화
- ⑤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국가 보유재산) 지원

지원·인프라 강화

**소상공인 도약을 위한 지원·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비서관 신설
- ②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 ③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 ④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선(자부담 완화, 수출·리모델링 등)
- ⑤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원 설립

법·제도 개선

**법·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 ①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
- ②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비자 허용
- ③ 플랫폼 공정화 기반 마련 (플랫폼공정화법, 상설협의체 등)
- ④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
-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리비) 개정

사회안전망 구축

**항구적인 소상공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 ① 소상공인 복지 기반 마련 (복지법, 여성지원, 복지센터 등)
- ② 인력안정을 위한 제도마련 (일자리안정자금, 인력지원법 제정)
- ③ 소상공인 보험 3종 패키지 (고용+산재+화재)
- ④ 폐업·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희망리턴패키지 등)
- ⑤ 소상공인 특화 공제 제도 강화

혁신성장 기반구축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소상공인 민간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 ① 소상공인 회관 건립 (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
- ② 소상공인 디지털 상생 협업 모델 구축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도입)
- ③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등 지원 활성화
- ④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클라우드 펀딩 및 골목상권 크리에이터 활성화)
- ⑤ 소공인 직접지구 발전 기반 마련(도심형, 가업승계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소상공인 미래 아젠다 선정 및
차기정부 핵심 소상공인 과제로
자리매김 추진**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턴 어라운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1

Chapter 1. 5大 아젠다 25대 핵심 과제

위기극복

1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터널을 지나왔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극심한 내수 침체, 소비심리 악화로 폐업률과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폐업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음
-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만5060명
- 국세청 2023년 기준 소득을 '0원'(소득 없음)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5024명, '0원 초과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16만5161명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달하며,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 311만1434명 늘어난 규모

건의사항

- 역대 최악의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맞아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필요 (소상공인 추경 편성)
 -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2025 연매출 3억원이하 크레딧 지원 사업 대상자 311만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위한 국가차원의 의지 표명 필요

2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완화

√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완화 (전기계약종, 수도요금 감면)

현황 및 문제점

- 복합적·장기화된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

-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갑/을), 교육용(갑/을),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은 일반용 전기요금 계약종 적용

- 부산(7% ↑, '24.10~), 울산(12% ↑, '24.7~), 광주(9.2% ↑, '24.12~) 등 지자체는 '24년부터 수도요금 인상 결정
 - 과거 “코로나19 피해지역 상수도요금 감면 조치”는 재난상황을 감안한 단기적·한시적 조치

건의사항

- 전기료 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부담완화 필요
 - 도시가스요금 체계에서 영업용1, 영업용2로 세분화되어 있듯이 현행 전기료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완화방안 마련
-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 사업장 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 특수업종(PC방, 숙박업, 외식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용 계약종 신설로 소상공인 에너지 고비용 부담 구조적 해결 가능
- (상업용 수도요금 감면) 지자체별 수도요금 감면 조항에 의거하여 서울의 경우를 참조하여 전국 소상공인에게 상업용 수도요금 감면 추진

3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고금리, 高물가, 高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지출은
 -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
 - 기준금리 2021년 1월 0.5%에서 2023년 1월 3.5%로 2년만에 7배 상승(한국은행)
 - 2023년 물가상승률 3.6%, 2024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2.5% 인상
- 국내 민간소비증가율은 2021년 4분기 6.1% 상승(전년동기대비)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3분기 소비증가는 0.2%로 급감함

	2021	2022				2023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한국	6.1	4.0	4.0	5.2	3.3	4.6	1.5	0.2
OECD	-	6.9	4.7	3.2	1.9	2.4	1.7	1.5

2022~2023년 한국·G7·OECD 분기별 민간소비 증가율(%) (OECD, 2024년 1월)

- 24.1.3 당시 여당은 제22대 총선공약과제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 상향을 발표한바 있으며 신년 2025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 조치 발표

건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으로 소비촉진 필요

구분	점포(사업체)수	종사자	공제율 현황	개선안
전통시장*	241,080	324,779	40% (2024년 80% 확대)	공제율 80%로 일괄 상향
소상공인**	7,335,397	10,461,890	공제율 15%	

*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 중소기업기본통계(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향상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분	공제한도('23.12)			개선안
	기본	추가	합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기본공제 한도 80% 일괄 상향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450만원	

4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채무조정, 장기분할, 희망통장)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 한계상황으로 내몰림
(1,123조원, '24년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규모)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사 대출 추이 >

구 분	2022년도 말		2023년도 말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수	3만 3,390명	90%이상 상승	6만 3,649명

-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대부분이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

건의사항

- (소상공인 직접대출 확대) 비교적 문턱이 낮은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직접대출을 20조원 규모로 확대
- (대출 전환자 장기분할 확대) 기존 대출 전환에 있어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상품 출시의 경우처럼,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길게 설정하여 리볼빙 개념으로 소액 규모로 안정적인 상환 유도
- (새출발 기금 보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위주로 한정된 새출발 기금을 현재 경영중인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 편성하고, 성실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의지 고취 방안 모색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정보 등록으로 일정기간 신규대출이 막히고 신용카드 사용도 어려워 금융생활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처지에 새출발기금의 패널티 제도 지속 개선 필요
 - 새출발기금 심의 기간이 길어 병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새출발 기금 개편 또는 재창업자 지원 별도 기금 출연으로 현재 경영중인 소상공인 대상의 전직 및 재도전 프로그램 활성화
- (채무저감 정책 추진 및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수년간 안정적인 상환 소상공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 원금 탕감 또는 감면, 이자 감면, 우대 금리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추진
- 소상공인 경영·기술 교육 적극 참여자, 소상공인 조직화 기여자 등 인센티브 대상자를 계량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자활력 고취
- (다중채무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가 아닌 고금리의 부실차주의 경우도 대한대출 지원 대상 포함
-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 통장 도입)
 - 청년통장과 같은 소상공인 전용 매칭 통장으로 성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기회 제공
 - * 소상공인 50% + 정부, 민간후원 50%로 적금만기 시 일시 지급형태

5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국가 보유재산) 지원

√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국가 보유재산)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 경기 악화로 공실상가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매장의 장기 공실 문제는 도심 공동화, 경기활력 약화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에 큰 부담을 겪고 있으며 소상공인매장 공실 문제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음
 - LH, SH, 캠프 등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보유분 상가 중 장기 공실 상가를 대상으로 반값 임대료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상가건물 평균 월세 ('23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원)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대전
월세	177만	176만	171만	119만	116만	104만	77만	66만

* 상가 월세 평균 임대료 '18년 : 106만원 → '23년 124만원 (5년간 약 17% 상승)

건의사항

- 청년, 신규 소상공인 등 'LH 상가 반값 임대'
 - LH 및 캠프 등이 보유한 각 단지 내 상가, 장기 공실 등을 청년 소상공인을 비롯한 신규 유입 소상공인 등 초기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상가 반값 임대 추진
- 영세·취약 소상공인 'LH 국민임대' 우선 배정
 - LH에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대상에 '영세·취약 소상공인'을 추가
 - * 취약 소상공인(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도약을 위한
지원·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2

Chapter 1. 5大 아젠다 25대 핵심 과제

지원·인프라

1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비서관 신설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비서관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더해 중장기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필요
-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경우,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도 존재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중요부분을 포괄하는 소상공인 분야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권차원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립)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정부관계자는 물론 소상공인,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을 포괄하여 소상공인 분야 정책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 선반영 추진
- 각 지자체에도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가임대차문제, 고용노동 분야, 규제개선 분야 등의 분쟁조정을 법적 절차 이전에 실효성 있게 처리·중재
-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제도 신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실효성 강화와 소상공인과의 소통강화, 소상공인 자존감 고취 등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일대전환 추진
- (중기 옴부즈만 대통령 직속 격상)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시켜 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의 전환 필요

2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적 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의 지원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의 성장지원과 재도전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확대 필요
 - * (현재) 5.4조원 규모 → (증액) 10조원 이상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을 더욱 확충하여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도를, 소상공인 단체들과 협의를 일상적으로 담당하며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전담차관 / 보건복지부 : 보건 담당 차관 등 존재

건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로 소상공인·자영업 담당자들의 직급과 체계를 확충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마련 추진
- 이를 통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의지 표명, 소상공인 자존감 고취로 소상공인 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3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현황 및 문제점

- 금융비용부담으로 인한 사업자 폐업률 증가
 - 고금리, 고물가 등의 지속되는 3고(高)의 경제여건과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내수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로 사업자 폐업* 속출
 - * '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연간 폐업자 수는 '19년 92만2159명에서 '20년 89만5379명으로 줄어든 뒤 '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3년 100만명에 가깝게 수직 상승('24.7.15. 국세통계연보)
- 중·저신용(5~8등급)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의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 그러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에 따르면 기존 금융기관(제1금융권)의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중견·대기업 중심의 금융 서비스만을 확대하는 추세*
- * '21년 대비 '23년도 대기업 대출금 12% → 15%로 증가 (한국은행 경제통계)

건의사항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적·한시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위한 전문 정책금융 기관 설립 필요
-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시행한 HAMP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제도를 감안하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새출발기금)을 넘어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들의 대출 채무를 조정하여 한곳으로 통합하는 프로그램 실시
 - 다양한 금융(1, 2금융, 대부업)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별 채무를 조정하여 한 곳에서 저금리로 통합시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복력 지원
- 현재 논의중인 제4 인터넷 은행설립의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감안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은행법 제정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선 (자부담 완화, 수출·리모델링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 개별 지원사업 시 자부담률은 20~50%로 디지털 전환 등 제품 설비 도입 시 영세소상공인 비용 부담 존재
 - * '24년 소진기금 내 48개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개별 지원사업 수는 31개이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 경영상태 별 자부담 비율 기준 완화로 영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필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분류(안)>

구분	분류 기준	기업수(통계명)*'22년 기준
취약	간이과세자* (당해매출액 1.04억원 미만)	430만개(중소기업기본통계)
영세	5천만원 미만	319만개(중소기업기본통계)

- 온라인 판로 확대 및 글로벌화에 따라 플랫폼 사를 활용한 해외직구 등 소상공인 수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적어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의 어려움 및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양극화 심화
- 전기안전 환경개선, 주방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 내부 인테리어, 시스템 개선 등으로 화재 및 재해예방, 소비자 친화형 경영환경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추진

건의사항

- (영세 소상공인 자부담 완화)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자부담 기준 완화를 통해 정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도약의 계기 마련 필요
 - 취약, 영세 소상공인들 중 업력, 의지, 학습능력 등을 정량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자부담 비율 부담 완화 필요(0~20%내외)
- (수출 특화 품목 지원) 소상공인 수출 특화품목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 대상 확대 및 원산지 검증, 수출신고, 통관 절차 등 행정 지원 확대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선정 시 수출특화 소상공인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필요
- (소상공인 점포 리모델링 개선 사업 실시) 주방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등 소상공인 가게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 업소당 최대 6~8 백만원(자부담 20% 및 부가세 별도) 지원 추진
 - * 기초지자체(당진시, 평택시 등)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사업' 기준

√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 분야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영역
 - 소상공인은 경제·제도·공간·기술·노동·창업·법률에 걸쳐 있어, 단일 관점으로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융복합 정책영역’임
- 폐업 증가, 부채 확대, 플랫폼 종속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정책 개발과 대응이 시급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에 소상공인 관련 연구 기능이 존재하나, 전담 인력과 조직 규모가 제한적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요기능이 각각 집행기관과 민간단체인 조직으로, 정책 연구를 전담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건의사항

-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필요)
- 소상공인 정책은 다부처 통합 조정, 이해관계 조율, 제도 설계, 구조적 전략 수립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 이는 소상공인을 ‘현장 행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본 결과이며, 연구·정책·데이터·법제화까지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브레인 조직 필요
- 따라서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기관을 설립 대대적인 인원 확충 및 예산 지원으로 범부처적 정책 총괄 기능과 상위 전략 설계 기능을 수행



법·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3

Chapter 1. 5大 아젠다 25대 핵심 과제

법·제도 개선

√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선 (자부담 완화, 수출·리모델링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임금의 지급주체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업종, 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22년 12.7% → '23년 13.7%) 하는 등 최저임금 수용성 감소 (한국경영자총협회, '24년)
- 또한 단일 최저임금 체계로는 업종별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경기에 민감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취약업종*은 더 큰 타격을 받음
 - *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기타서비스업(25.3%)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평균(13.7%)보다 현저히 높음 (최저임금위원회, '24년)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양산하는 '쪼개기 고용'을 늘리는 등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 주휴수당에 대한 의견 : 폐지(97.8%), 유지(1.3%), 모르겠음(0.8%)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19년)
 - 아르바이트 고용 부담 요소 : 주휴수당(73.5%), 최저임금(46.9%) (한국신용데이터, '24년)
 - 주휴수당이 도입된 1953년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가 필요했으나, 주5일 근무가 정착된 현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
 - *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 등
- 대법원 판결(2006다64254) 등의 경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음

건의사항

- (업종별 구분적용 실시)업종별 구분적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 19개국이 업종·인력·지역별 구분적용을 실행중에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명시된 조항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 결정기준에 취약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고용주(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제도개선 건의
- (주휴수당 폐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이중부담 완화 필요 또는 주휴수당 제도 자체 폐지로 횡행하는 쪼개기 알바를 저감하고, 취약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및 소상공인 부담완화로 경제 활력 제고 추진

2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비전문취업 비자) 허용

√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비전문취업 비자) 허용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 사업장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은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며 낮은 임금, 낮은 복지, 낮은 인식이 인력난·이직난·생산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특히 소상공인 주요업종인 숙박업·제과점업·주유소업의 경우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D 업종으로 상시직은 물론 임시직조차 채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
-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장 내 외국인 인력 채용이 절실하나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채용 제도 관련 사각지대 존재

비자종류	대상	허용업종
E-9 (비전문취업 비자)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대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 폐기업, *호텔업, *한식 음식점업 등), 어업, 농축산업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중 호스텔업(서울·부산·강원·제주 소재 업체에 한하며,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고용에 한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건의사항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주요업종(숙박업, 제과점업, 주유소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안을 파악하여 E-9(비전문취업비자) 허용업종 확대

3

플랫폼 공정화 기반 마련

√ 플랫폼 공정화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 * 온라인플랫폼이 사업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24.02.05.)
: 매우크다(51%), 다소크다(20.5%), 보통(19.1%), 다소적다(3.6%), 매우적다(5.9%)
- 쿠팡, 야놀자, 직방 플랫폼 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점 업체에게 불공정 행위(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판촉비용 떠넘기기, 책임 회피 등)를 기반으로 한 불공정 거래로 사회적 갈등 지속 중

유형	주요 내용	주요 경쟁제한 효과
시장 직접 진출	플랫폼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시장 진출(야놀자, 직방,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 강화
과도한 수수료	고객에게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해 주는 금액을 업주에게 광고비나 중개 수수료로 할당	
자사우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	독점력을 지렛대(leverage)로 연관시장까지 독점화

- 공정거래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취지 강조

건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행위규제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 관련법안 제·개정 필요
- (상설협의체 상설기구화) 기 진행된 배달앱 상설협의체 확대 필요. 공정위 산하 또는 재단화하여 상설기구화하여 소상공인 관련업 기업 등과 실질적인 상생 및 협의를 통해 상시적인 수수료 관련 분쟁 조정 필요

4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

√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부가세 인하,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등)

현황 및 문제점

- '24년 총선 당시 여당 지도부는 부가가치세 절반 이하 및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 공약 발표
 - 가공식품 등 생활밀접 필수품에 한시적으로 현행 10%에서 5% 인하 공약에 나섰으나 재정부의 반대로 무산
 -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경우 20년 가까이 4,800만원이었으나 윤석열정부에서 '24년 2월 8,000만원 → '24년 7월 1억400만원으로 상향
- 2024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3%(2027년 이후 1.0%)에서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0.65%(2027년 이후 0.5%)로 축소.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법인 200만원, 세무대리인은 500만원으로 축소
-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나, 지방세는 납세자 카드수수료가 면제인 반면, 국세는 납부대행 수수료 0.8% 발생
 - 국세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국세징수법 제 12조), 지방세는 신용공여 방식(카드사가 결제시 지방세를 바로 납입하지 않고, 납세자로부터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운용 후 지방세로 납입) 이용

- 동일한 세금임에도 세금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 유무가 상이한 것은 불합리하며,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 지적
→ 최근 5년간('14년~'18년) 카드수수료 부담 약 8천억원 상당
* '20.1월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국세 신용공여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건의사항

- 부가세 한시적 인하 및 간이과세 기준 확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부가세 한시적 인하와 간이과세 기준 2억까지 상향 추진 요청
- (조세지원 강화) 전자신고세액공제 부활, 연매출 5억원 부가세 세액공제를 완화
- 영세 소상공인들의 국세 납부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세정 실현을 위해 국세도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하여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면제 추진

5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제도개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리비)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낮추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에,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실질적인 임대료 인상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
- 관리비 부당청구,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 기간 등 법률상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필요

건의사항

- 관리비 한도 규정의 신설, 환산보증금 제도의 폐지, 임차인의 해지 통고 기간 규정 등 상가임대차 안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강화해 임차 소상공인의 피해 실태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제도개선 논의 추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향구적인 소상공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4

Chapter 1. 5大 아젠다 25대 핵심 과제

사회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 복지 기반 마련 (복지법, 여성지원, 복지센터 등)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복지법 부재)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은 4대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보험과 근로장려 세제 위주로 설계
- 규모의 영세성으로 외부충격이나 산업민감성 및 회복탄력성이 취약한 소상공인 산업 전반에 대하여 소상공인복지법이 필요한 상황
 - 농어업·산림 산업의 진흥과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을 위하여 농어촌복지법, 산림복지법이 있으며, 문화예술체육산업을 위한 예술인복지법, 체육인복지법이 있음
- (여성소상공인 부담 가중)
 - 여성 자영업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3년 처음 30%를 넘어섰음
 - * '22년 : 168만 9000명 → '23년 : 174만 6000명 → '24년 177만 7000명(출처 : 통계청)
 - 육아휴직 지원제도, 임신 출산 육아기 지원제도 등 근로자 중심으로 지원으로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일·가정 양립 실현 난망

건의사항

-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소상공인기본법에 기반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 (여성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강화) 출산 여성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연장하여 대표자의 출산 공백 시 경영안정 도모
 - 재기 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조특법 제99조의8)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
 - * 최대 3년(임신(10개월)·출산(3개월)·육아기(2년))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부산 등 지자체 시행 중), 무주택 소상공인 LH 임대주택 우선 선정,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등 부여 등 총력 정책 지원
- (거점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지자체 연계로 통한 지역 거점 소상공인복지센터 설립(선행적으로 수도권에 신규 건립 후, 순차적으로 전국 권역별 확대)
 -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학교(대학연계 청년멘토링, 교육 및 창업컨설팅 등), 업종별 심화 교육, 재기교육(재창업, 업종전환, 취업교육 등), 정책공유(정책안내 및 교육 등), One-stop 공간구성

2

인력안정을 위한 제도마련

√ 인력안정을 위한 제도마련 (일자리안정자금, 인력지원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 3高 현상으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폐지로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감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짐
 -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연평균 성장률 0.9%인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7만 원에서 2024년 296만 원으로 연평균 2.2% 증가(소상공인 연합회, 2024.6)
- 최근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종·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구인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음식업, 임업, 광업 등 소상공인의 인력 수급난 지속
- '03년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는 소상공인의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만 제공받고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법 제3조 적용범위가 '중소기업'이므로,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지원법 필요

건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재도입 및 지원 규모 확대)
 -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재도입하고, 기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고용 불안 해소
 - 소상공인 고용 축소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소득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 확대 필요
 -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방식의 체계 전환
-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소상공인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와 외국전문인력 활용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원격 훈련 실시 등
 - 소상공인 지원 소관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 소관 부처(고용노동부)의 협력 및 소통 추진

√ 소상공인 보장 보험 3종 패키지 강화 (고용+산재+화재)

현황 및 문제점

- 여러점포가 밀집돼있는 상점가, 골목상권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업장의 노후화 된 전기, LPG 가스사용으로 소상공인은 화재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 (23.06) 속초 청년몰 점포 20여곳 전소, (23.04) 부평 대형상가 대형화재 등 상가형 건물 화재건수는 연간 평균 4만건
-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사고발생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사업을 시작(중기부)하였으나 전통시장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용 공제상품으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화재공제 상품을 가입할 수 없음
- 전통시장 화재공제 또한 적은 보상금(건물·동산 각 3,000만원), 영업중단에 대한 미비한 손실 보상(1일당 5만원),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24년 국감에서 중기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5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2,1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의 0.9% 수준
 - 산재보험의 경우, '22년 기준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 0.57%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의 2025년도 예산안은 '24년도 150억 800만원 보다 1.2% 감소한 148억 27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도 부족한데 오히려 뒷걸음질

건의사항

- 화재공제 제도 범위에 기존의 전통시장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 골목상권도 포함
 - * 화재보상금(1억원), 사업장 휴업일당(1일, 10만원) 등 화재보상 범위 확대 필요
- 국회 지적사항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사업은 현재 유일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상황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대대적인 상향 필요

※ 현재 지원제도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지원
- 산재보험료 : 30% ~ 최대 50% 지원사업 실시

4

폐업·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 폐업·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 부재와 재기 지원 체계 미비로 소득 공백이 발생해 생계 유지가 어렵고, 준비된 재도적인 어려운 악순환 심화
 -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98.6천 명이며, 2024년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
 - 소상공인 폐업 후 주요 생계 수단은 아르바이트, 개인자산, 가족·지인 지원, 대출 등이 90%이상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재도전 한계
 - *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 하는 이유 또는 '생계유지'가 55.9%로 압도적임

< 폐업 후 주 생계 수단 >

(n=2,101, 단위 %)

취업(아르바이트)	보유 재산으로 충당	부모, 친인척 등 지인 도움
38.3%	21.5%	18.9%
대출	사업소득(재창업)	정부지원(기초수급대상자)
12.6%	8.0%	0.7%

* 자료 : 2024 지역신보 보증이용기업의 폐업 실태조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25.2)

건의사항

- (재도전 생활안정자금 신설)
 -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 3~6개월 가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재도전 생활안정자금 신설
 - 단계별 지원 및 과밀업종 진입 방지 인센티브추진
 - 소득(자산)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이 높은 업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 강화
- (재도전 지원 별도 기금 출연) 새출발 기금 확대 편성이나 재도전지원 별도 기금을 출연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과 연계하여 현직 소상공인 대상의 전직 및 재도전 프로그램 활성화
 - 현재 재기사업화지원 사업 국비 최대 2천만원(자부담 50%)비율을 최대 5천만원(자부담 30%)까지 단계별 확대 목표

√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기존 공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공제로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가입 가능
* 노란우산공제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 : 9만1942건(전체 5.2%) (중소벤처기업부, '24. 5월 기준)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기존 공제는 제한적인 상품으로 다양한 소상공인의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며,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공제 필요

건의사항

- 지원 예산 및 기금 투입으로 소상공인 공제의 공공성 강화 및 보장범위 확대
- 소상공인만을 위한 공제 제도는 노란우산공제의 장점(복리, 세액공제, 차압 불가, 약관 대출 등)이 들어가고, 소상공인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가 주도하는 공제상품 도입 필요
 - 기존 소상공인 사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근로자(임직원)가 가입할 수 있는 공제 마련
 - 소상공인 긴급자금 필요 시 적절한 금리(3% 이내)로 대출 가능한 금융상품 도입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소상공인 민간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5

Chapter 1. 5大 아젠다 25대 핵심 과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 주체임에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를 비롯해 독립적 공간이 없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민간영역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
- 각 단체별 독립회관 존재

기관명	설립연도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1962년	6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단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971년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
한국경제인협회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1970년	노사화합과 기업경영 안전화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국고보조 지원으로 회관 설립

건의사항

- (소상공인 민간영역 강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일자리 창출, 성장 촉진, 글로벌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영역 역할 강화 필요
- (소상공인회관 설립) 소상공인연합회의 업무 능력 신장,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단체 집무실 및 각종 회의실 및 교육지원을 위한 강의실, 세미나실 등과 같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필요
- (소상공인 혁신 비즈니스 대규모 체험장 구축) 소상공인연합회 회관에 소상공인의 실험적 혁신 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대규모 체험장 조성
 - 전국 규모의 '소상공인 혁신 체험장(비즈니스 테스트 존)'구축
 - 교육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정책 체계 전환
 - 민간전문가 및 소상공인 융합 상시운영체계 구축
-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 주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착한선결제, 착한임대인 제도, 우수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차원의 소상공인 관련 캠페인이 민간과 정부를 아울러 펼쳐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4대 생업피해 저감 추진

2

소상공인 디지털 상생 협업 모델 구축

√ 소상공인 디지털 상생 협업 모델 구축 (공동브랜드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협업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협·단체 참여율은 정체되고 있으며, 이는 협업 기반이 협소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줌
 -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가입률은 2020년 14.2%에서 2021년 16.3%, 2022년 15.4%로 15% 내외 수준

<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가입률 >

(단위 : %)

2020년	2021년	2022년
14.2%	16.3%	15.4%

자료 : 소상공인실태조사(통계청)

건의사항

- 지역 협업 실행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 정비
 - 소상공인연합회 중심의 지역 기반 실천형 협업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지원
 - 협력 성숙도 제고, 맞춤형 협업모델 개발 및 운영, 공동사업 매뉴얼, 디지털 협업 톨 전파 및 실행조직 코디네이팅
- 민간 기반 소상공인 협업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 및 파견
-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육성) 거대한 네임밸류를 가진 대기업, 중견기업, 거대플랫폼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경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간 상호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 협업, 마케팅으로 현재의 구조를 극복하여 적극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 등 사업 추진 필요 위해 기존 소상공인연합회의 K-tag 공동브랜드 재도입 등 특화사업 실시

3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등 지원 활성화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등 지원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도시형 소상공인은 2021년 기준으로 55여만개에 이르며 종사자는 128만여명에 달함. 전체 제조업종 도시형 소공인의 비중은 88.8%, 종사자수로는 26.1% 차지하는 제조업의 부리를 담당
- 업종은 주로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기계제조, 기타제품, 의복, 약제사리, 전기장비 등
- '23년 12월부터 '도시형 소공인 지원특별법'이 시행중이며 전국 40여곳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운영중인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상대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및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 (전국적 발전협의회 구성) 중기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전국적 도시형 소공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특화지원센터 사업 연계 및 발전 도모 및 기업 육성 체계 구성으로 앵커 역할 담당
- (업종 특화 분석센터 설립) 지역별 소공인 지원체계에 더해 업종특화 교육을 전문으로하는 업종특화 분석센터를 설립, 전국적 연계를 통해 소공인 기술력 및 경영능력 제고 추진 및 공동브랜드 화를 통해 대기업 및 온라인 대비 경쟁력 강화 추진
- (기술 전수 활성화) 소공인의 핵심기술 전수 대상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수 의사는 있으나 전수대상 없음'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가업 승계를 통한 기술전수 대상 부족상황 타개 필요
 - * 소공인 기술·기능 전수현황 및 국내외 지원 정책 비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골목상권 활성화를위한 기반 구축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현황 및 문제점

- 열악한 소상공인 금융환경으로 정책자금에 한계가 있으며 창의적인 혁신 소상공인의 대출에 있어 민간 영역에서 투자 활성화 추진 필요

건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민간자본 매칭형 정책자금(소상공인형투·융자 복합 금융) 확대로 소상공인의 신속 성장 지원
 - * 투융자 복합금융(중진공) : 전환사채(CB) 등 주식 연계 회사채를 인수하여 융자를 지원하고 성장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투자 형태로 지원
- 우리동네 클라우드 펀딩 사업 확대
 - 소액투자 관련한 앱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존 소액 투자앱 등과 연계하여 일반인들의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 투융자에 대해 리워딩 방식을 상품 쿠폰·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 필요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 지원 필요
 - * 네이버 해피빈 프로그램 등을 감안하여 플랫폼사와 연계하여 일반인 소액 투자 활성화 추진
 - * 2025년 예산 341억원 → 1,000억원 이상 확대 필요
- 민간 투자 매칭 펀드 조성 확대
 - 민간 투자자가 선 펀딩 시 고도화 자금을 2~3배 매칭 융자로 지원하는 투자 연계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기존 틱스프로그램을 소상공인 영역까지 확대하여 민간자금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의 사업확장 자금 확보로 혁신 소상공인 성장 도모
 - * 틱스(TIPS) : 민간 투자사가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에 9억원을 후속지원
- 로컬 크리에이티브 지원 사업 활성화
 - 로컬 크리에이티브 육성을 위한 대학 연계 및 청년 창업 연계, 각 지역 소상공인 특화

센터 및 소상공인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년소상공인과 매니저를 결합하여 로컬크리에티브 양성과정 설립 및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소상공인 단체 통한 알림봇 사업 운영
 - 소상공인 지역연합회, 상인단체 등을 통한 중앙·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알림봇 사업 활성화를 통해 대정부 지원 사업 활성화 추진

5

소공인 직접지구 발전 기반 마련

√ 소공인 직접지구 발전 기반 마련 및 가업승계 활성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성수동, 문래동 등 기존 소공인 직접지구의 경우 관광 자원화로 유동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소공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가속화
 -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제도의 협업시너지 효과 감소와 함께 근본적으로 소공인들의 판로 및 매출신장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음

건의사항

-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영등포기계상가,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시흥공구상가) 등 기존 공구 상가에 숙련 소공인, 청년 소공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유치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소공인과 기존 공구유통상인의 시너지 효과 추진
- 소공인 직접지구 및 협업 지구로 선정하여 과감한 세제 특혜 및 육성사업으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구상가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소공인과의 협업은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제조업 근간이 되는 산업.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가업승계 활성화)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정책인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최근 3년새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육성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

* ('22년) 76억9500만원 → ('23년) 22억9400만원 → ('24년) 4억2700만원

연번	구분	내용
1	비현실적인 청년 연령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만 지원
2	가업승계 지원금 부족	점포 개선에 필요한 지원금 부족
3	금융애로	개인사업자 대표변경 시 대출승계 불가
4	조세부담	조세 부담 우려

- 가업승계 지원금 확대(정책지원)
 - 가업승계 시 노후화된 점포의 인테리어, 시설 설비 확충에 필요한 지원금 부족을 감안하여 최대 5천만원 이상까지 확대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가업승계를 위한 사업자등록 이전 시, 기존 사업자의 대출, 지원금까지 승계 변경
- (가업승계 활성화 위한 상속세 하향 조정 추진) : (현행) 10%~50% → (개정) 6%~33%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Chapter

2

분야별 소상공인 정책건의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1

Chapter 2. 분야별 소상공인 정책건의

공통 분야

-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 및 지원 방안 마련
- 2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특별 할인 상품권 발행
- 3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골목형 상점가 확대
- 4 불공정거래 행위기업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제도 도입
- 5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법제화
- 6 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 한도미사용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 7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 건의·요청
- 8 복식부기 기장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장부 시스템 지원 방안
- 9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설정으로 인한 위변조 방지
- 10 공정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통합플랫폼 구축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 및 지원 방안 마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용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를 의무 도입되어 소상공인들이 장비 구매비용 급증, 인력난 심화, 인건비 부담 등 우려
 - * 2024년 1월 28일부터는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및 이동·교통시설에서 해당 조치가 의무화되고 6개월 뒤인 2024년 7월 28일에는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2025년 1월 28일부터는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
- 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해당돼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담
- 장애인용 키오스크가 최대 7배 이상 비싸며(중앙일보, 2025.04.25.) 공급 업체가 많지 않아 기기 보급·유지가 어려운 점, 수명 주기가 다하지 않은 기존 키오스크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을 의무화한 만큼,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릴 수 있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 개선의견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설치 의무화에 시행령 변경 필요
 - 시행령 상 100인 미만 사업장을 10인 미만으로 기준 완화
- 기존의 키오스크를 설치한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정부가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 설치 면제 및 도입 비용 지원제도 확대

2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특별할인 상품권 발행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정부의 소상공인 매출확대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은 발행 금액의 총액 확대와 할인을 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대부분 사용처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향상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

- 2025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한 매장 혹은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같이 확대된 사용처나 이·미용, 학원, 도·소매업·온라인판매 등 생활밀착형 업태에는 사용처와 공급량을 확대하여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 개선의견

-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확대하고 예산 규모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지역 이외에도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주변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 해야함
- 특별할인 상품권 발행
 - 특정 시기나 축제 기간에 맞춰 할인율이 높은 특별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3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골목형 상점가 확대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법령 : 전통시장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 현황 및 문제점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매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통시장과 상점가 전용으로 '09년 7월 도입되었으며, 상품권의 발행액 및 판매액, 개인 구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 지류형 상품권으로 시작하여 '19년 모바일상품권, '22년 충전식 카드형상품권 발행
-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전통시장 점포 수 감소와 상점가와 비대면 영업점포 수가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의 폭 넓은 사용처 확보 방안 필요
- 최근 '24.7월 범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소상공인 업종에만 국한
 - ※ 가맹제한업종 축소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절차 제도개선 현황('24.1월)

- ① 가맹제한 해제('24.7월 가맹제한 업종 40종 → 28종으로 축소)
: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 치과),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
-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24.7월 182곳 → '27년까지 300곳으로 확대)
: (기존) 2,000m²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등 밀집 기준 중기부 협의
(개선)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밀집기준 지정

■ 개선의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취급점포 및 가맹제한업소 최소화
 - 골목형 상점가는 등록 조건이 까다롭고 가맹률이 낮은 만큼 등록 조건의 완화 등 행정적 지원 필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제도개

선 필요하며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사용처 확대 필요

* 강원도의 경우 23만 소상공인중에 골목형상점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만곳에 불과하여 4.3%만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더더욱 사용 난망

4 불공정거래 행위기업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제도 도입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 및 거대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률에 의거 벌칙(과징금, 벌금, 고발 등) 적용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의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피해 소상공인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만 피해액 청구 및 수취 가능
 - 공정위의 제재조치로 인한 과징금(벌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손해액 보전은 불가능한 상황
 - 정보접근성이 낮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경우, 그 간의 경영손해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시간 소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
-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손쉽게 청구 가능
 - 법원이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유죄판결 선고시 피해자가 배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 효력 인정
 - 또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현실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 지고 있음

■ 개선의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명령 근거 마련
 - 불공정거래로 인한 실제 피해배상액이 명확하게 산정되었을 경우 배상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시 피해액 청구가 가능토록 규정 신설 또는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법제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현황 및 문제점

- '24년 3월 '그림자 조세'완화 조치로 국민 기업부담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 *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정해지는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 산정 대상 : 바닥면적의 합 1,000㎡ 이상, 분할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임에 따라 다수의 상가건물형 등록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담금 산정 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 350원 ~ 2,000원 차등적용

부과기준	3천㎡ 이하	3천㎡ 초과 ~ 3만㎡ 이하	3만㎡ 초과
'18년	700원	1,100원	1,600원
'19년	700원	1,200원	1,800원
'20년 이후	700원	1,400	2,000원

* 단 :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 코로나19 시기 일부 시·군들은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였으나, 감면 취지와 다르게 대형쇼핑몰 백화점 아울렛이 주로 혜택
 - * '20년 교통유발부담금30% 감면하였으나, 수혜기업 상위 30곳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이었으며 총 299.5억 중 46.9억(총액 대비 18.41%)의 감면 혜택을 받음

■ 개선의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시설물' 또는 '경감 시설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시설 포함하여 수혜대상인 소상공인 부담완화 법제화
 - 한시적 감면이 아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시설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로 포함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

6

소상공인 기업 한도 대출 한도 미사용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관련법령 : 대부업법 제2조

■ 현황 및 문제점

- 개인고객 한도대출은 실질적으로 대출자금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관련 이자가 부과
 - 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고객은 한도대출 약정시 한도 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부과
 - 한도약정수수료는 정액제 결제처럼 전체 한도액 대비 수수료를 미리 내는 것으로 한도 미사용 수수료는 미사용 금액 만큼만 추후에 수수료를 내는 구조
 -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 차주(고객)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한도미사용수수료를 0.1~0.8% 수준으로 책정 운영
 - 정해진 한도 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부과임*
 - 동일 상품에 대해 가계 기업대출을 구분하여 별도 수수료 부과는 불합리, 이자 외에 미사용 한도 수수료 부과는 이중부담에 해당
- *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부과 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

■ 개선의견

- 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에 대하여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부과 전면 폐지

7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 건의·요청

■ 소관부처 : 소방청

■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현황 및 문제점

- 빠르게 변화하는 소상공인 유통환경에 무인점포는 빠르게 늘어 가고 있음
 - 다양한 영업 환경, 다양한 업종으로 늘어나는 24시 무인점포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점포 실태파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무인점포 내 사건·사고 빈도 높아지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범죄 온상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소방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개선의견

-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 건의·요청
 -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방화문 등 피난시설 유지 관리
 - 안전시설 정기 점검 및 법적 교육과 의무 강화

8 복식부기 기장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장부 시스템 지원 방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간편장부)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음
 - 그런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원 한도)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복식부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되어 기피됨
 - 또한, 시중에는 세무사 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손쉽게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는 전자장부시스템이 개발·보급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마저도 사용료 부담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실정
- 이로 인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영세소상공인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관련 지원 혜택도 즉시에 받기도 어려운 실정임

■ 개선의견

- 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 지원* 필요
 -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105777, 임기만료폐기('24.5.29.)

9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설정으로 인한 위변조 방지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 현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증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지 않는 한 종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게 되므로 본인 식별 또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음
 - 주민등록증은 1999년 종이재질에서 플라스틱재질로 변경되면서 일제갱신을 하여 재발급된 이후 2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며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졌으며,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술이나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이 위변조하기도 쉬울 정도로 보안성이 취약함
 - 여권은 5년 또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 상실하도록 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신분확인 수단인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 또는 갱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 국가신분증 운영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8개국이 유효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유효기간이 20개국(71%)으로 가장 많음.

■ 개선의견

- 주민등록증에 10년 이내 유효기간 도입
 - 보안 요소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수록 정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의무 설정해야 함
 -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999년 일제갱신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해 연도별 순차적으로 10년에 걸쳐 갱신을 추진하여 분산할 필요가 있음.

10 공정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통합플랫폼 구축

■ 소관부처 : 공정위, 농림부, 중기부

■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외식산업진흥법, 소상공인법

■ 현황 및 문제점

-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편성이 어려워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모바일 금융사용자는 4,300만명이 사용 중이며 송금·결제 분야사용자는 3,042만명, 이 중 18.6% 가까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각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을 소상공인 전문금융기관이 발행 및 결제·통합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음

* 경기지역화폐는 송금결제앱별 사용자의 단독사용률이 카카오 페이보다 높으며,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서울Pay+, 부산동백전, 온누리상품권, 울산페이 등이 송금결제앱 사용량이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음



- 과도하게 높은 배달플랫폼 수수료를 적극적인 조정 필요
 -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소상공인과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정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향논의 필요
- 해외플랫폼 대비 국내 배달플랫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 구독료완화 필요
 - 포스설치에만 6만원, 키오스크 등 태블릿 1개당 구독료가 월 2만원이라고 한다면 자동주문 태블릿을 10개만 구독하여도 소상공인은 1명당 월 20만원의 구독료를 내야하는 상황

■ 개선의견

- 지자체 예산의존도를 낮추고 중앙정부차원의 예산 확대 및 사업운영 및 지원 소관과 신설
 -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고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이 증가하고, 이를 담당할 새로운 중앙정부 차원의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예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고려
 - 또 제로페이, 서울페이 등 지역화폐 결제시스템내 인앱 서비스에 공정배달앱서비스를 추가하여 노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2

Chapter 2. 분야별 소상공인 정책건의

건설 · 에너지 · 안전 분야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 경미한 건설공사등 일부 개정(안) 정책 제안
- 3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시공행위 근절 대책 마련 및 온돌설치확인서 제출 법제화
- 4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주무관청을 국토교통부로 이관
- 5 부동산 중개플랫폼 기업의 중개법인 설립 금지
-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건의
- 7 고압가스 판매업소 한국가스안전공사 독단검사의 건
- 8 LPG 소형저장 탱크 250kg미만 이격거리 기준완화
- 9 LPG용기 운반차량(2.5톤 이하) 등록제 제외
- 10 LPG(프로판)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취급량(50,000KG)으로 PSM규정 조정 건의
- 11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내 하이숍입점 관련 지침 마련 및 운영권 계약체계 개선
- 12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전담부서 신설
- 13 신고배제 광고물 5제곱미터 허용 제한
- 14 불법 광고물 양성화 또는 추인 지원
- 15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 재난사고 예방 재정지원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5,000만원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테리어(실내건축) 공사 시 자재비 및 인건비의 지속적 증가로 규정된 금액으로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완벽한 마무리 공사도 어려움이 있음
 - 예전에는 인테리어(실내건축) 공사가 노후 자재의 교체나 정비 수준에 머물러 왔다면 오늘날에는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변화하고 있어 공사수주 금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종합공사 5,000만원,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로는 완벽한 마무리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실제 1천500만원 초과 공사가 자행되어 인테리어 종사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개선의견

-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도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는 종합공사는 1억원, 단품공사는 5,000만원까지 공사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필요
 - 종사원 2~3인이 대다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등록기준(건설기술자 2인이상, 자본금 1억 5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 사업자들로서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표준화된 시공과 안전하고 건전한 인테리어(실내건축) 산업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음

2 경미한 건설공사 등 일부 개정(안) 정책 제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5,000만원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98.12.31.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012.10.29.일부 개정 후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가 상승하였음에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1998.12.31. 제정 당시 소규모 인테리어(실내건축) 공사 1,500만원 미만이라는 공사금액은 26년 동안 개정되지 못하였음

- 자재비 및 인건비의 지속적 증가로 규정된 금액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마무리 공사도 어려움
- 소규모 사업자들은 1,500만원 초과 공사로 인한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
 - 종사원 2~3인이 대다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전문건설협회 등록기준(기술자 2인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 영세사업자들로 구성

■ 개선의견

-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는 종합공사는 5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 단일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 5,000만원 미만까지 공사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필요

현행	개정(안)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 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 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0이상의 계약으로 분 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 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 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 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0이상의 계약으로 분 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 이 1억원 미만인 건 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 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3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시공 행위 근절 대책 마련 및 온돌설치확인서 제출 법제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축법 제2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불법시공행위(무자격, 무등록 등) 단속기관의 행정인력 부족으로 감시시스템 부재

- 불법시공 행위 성행 및 부실시공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 발생
- 무자격자 불법시공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 완료 후 ‘온돌설치확인서’를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행정관청에 대한 의무적 제출이 아니므로 법률적인 한계 존재

■ 개선의견

- 시공업자 단체(협회)에서 ‘불법시공행위 감시원 제도(명예지도원제도) 도입 및 운영
- 난방시공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주축이되어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설립된 시공업자 단체(협회)에서 불법 시공행위 지도원을 두고 상시 지도 및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예환경감시원, 야생동물보호원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일러 불법시공행위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불법 시공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을 건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온돌설치확인서’의무 제출토록 법률 개정 요청
- 소방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공사 등과 같이 가스난방공사도 “온돌설치확인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법률개정을 제안함

4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주무관청을 국토교통부로 이관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인테리어관련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업체’이며, 대다수가 건설업 종사자(건설산업기본법)로 구성
- 현재 산업자원부(담당 주무관청) 내에 ‘실내건축공사업’ 담당 주무부서가 없어,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산업자원부 업무현황보고(산업자원부가 산하 협회 대상으로 주최)에서 본 협회의 설립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토부로의 이관을 주문받음

■ 개선의견

-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의 경우 주무관청을 산업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요청
- 소규모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인의 전문성 함양 및 국민 주거생활의 품질향상 도모

5 부동산 중개플랫폼 기업의 중개법인 설립 금지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제17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부동산 신산업의 범위를 크게 부동산(property)에 기술(technology)을 접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 프롭테크(proptech)를 비롯해 부동산자문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신규 서비스로 설정
- 부동산 신산업의 서비스 쏠림 문제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심각
 - 사업체의 약 1/4, 종사자수의 약 1/3, 매출액의 과반이 부동산거래플랫폼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은 타 플랫폼기업(호갱노노, 네모 등)을 인수·합병함은 물론, 직접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시장에 진출
- 직방 중개법인인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자사 가맹점과 함께 지역독점 및 정보독점을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
 - 직방 플랫폼 이용자에 비해 직영 중개법인·분사무소·파트너 공인중개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직영법인 광고 상단 노출 등) 부여 문제
 -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악용하여 청년 공인중개사들을 레드오션인 중개시장에 진입시켜 기존 시장과의 무한경쟁 및 마찰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

■ 개선의견

- 거대 중개플랫폼사의 시장지배적행위(인수 합병, 정보독점 등) 관리감독 강화
- 부동산 중개플랫폼과 중개법인의 분리
 -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개법인 등을 설립하여 중개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필요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건의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은 가스안전공사만이 가능하고, 공인검사기관(민간)은 법령 미비로 수행이 불가능

- 민간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으로 검사비용 절감 및 민간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산업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발표
 - 시행규칙 개정사유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기준을 마련하다”라고 하였으나
 -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구분에서는 가연성·독성가스를 취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은 공인검사기관에 자율검사 대행을 제외시킴.
 - *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대부분이 용기보관실에 가연성, 독성가스를 보관하고 있어 금번 공인검사기관에 자율검사 대행 허용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음

■ 개선의견

- 시행규칙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구분에서 고압가스 충전·저장과 다르게 판매업소에 대하여 민간 공인검사기관이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별표 36] 개정 필요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

개정(안)		건의(안)	
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	기술인력	검사구분	기술인력
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 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고압가스 충전·저장(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7 고압가스 판매업소 한국가스안전공사 독단검사의 건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6]

■ 현황 및 문제점

- 2023. 8. 16.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안 별표 36 제1호)
- 고법 시행규칙 [별표 36] 2.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에서 검사구분에 “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과 관련함
 - 대다수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LPG 판매업소와 겸업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에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독성가스 등을 각각 구분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들중 일반 고압가스 판매업소 2,082곳 중 1,482개소(71.18%)가 LPG판매사업자들이 겸업으로 운영

- 고압가스 판매업소 공인검사기관 자율검사 대행을 위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고압가스 판매업소 자율검사에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도 민간공인검사기관에 자율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개선의견

- 시행규칙 별표 36의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구분에서 고압가스 충전·저장과 다르게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고압가스 판매업소에 대하여 민간 공인검사기관이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신구조문 대비

개정(안)	건의(안)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 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table><tr><th>검사구분</th></tr><tr><td>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 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td></tr></table>	검사구분	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 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 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table><tr><th>검사구분</th></tr><tr><td>고압가스 충전·저장(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시설은 제외한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td></tr></table>	검사구분	고압가스 충전·저장(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시설은 제외한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검사구분					
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 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					
검사구분					
고압가스 충전·저장(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시설은 제외한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8 LPG 소형저장 탱크 250kg미만 이격거리 기준완화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 현황 및 문제점

- LP 가스를 사용하는 영업소는 가스 용기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250kg 이하의 소형저장탱크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함.
 - 250kg 미만 소형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화기와는 우회거리가 있어도 추가적인 설치거리 기준에 따라야 하며,
 - 도심(都心)에서 소형탱크(250kg 미만)를 설치하여 용기 교체 주기가 필요 없는 체적거래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하고자 함
- 도심의 건물 밀집 지역은 설치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50kg 용기 여러 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사례 발생
 - 용기 여러 개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체결 및 연결부위의 가스 누설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하여, 용기 교체에 따른 사용 중단 상황 개선 미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의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를 충전질량 1000kg 미만에서 250kg 초과 부터 설치거리 적용

■ 개선의견

-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를 250kg 초과할 경우부터 적용하여 주변 시설물과 사이에 유지해야하는 설치거리 기준의 개선이 필요
 -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개정 필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1)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에 충전질량 기준 추가)

개정(안)				건의(안)			
1. 일반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저장설비~(생략) 2) 기초기준 (생략) 3) 저장설비기준 가) ~생략 바) ~ (1)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1. 일반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저장설비~(생략) 2) 기초기준 (생략) 3) 저장설비기준 가) ~생략 바) ~ (1)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소형저장 탱크의충전 질량(kg)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 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m)	탱크 간 거리 (m)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 까지의 거리(m)	소형저장 탱크의충전 질량(kg)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 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m)	탱크 간 거리 (m)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 까지의 거리(m)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250이상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9 LPG용기 운반차량(2.5톤 이하) 등록제 제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 현황 및 문제점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은 고압가스 사고 발생시 대형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독성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 14.01.16 「불량 LPG용기유통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용기 운반차량의 등록제 도입을 발표
- LPG판매소의 용기 운반차량은 판매업소 인근의 수요자에게 LPG용기를 공급하는 대부분이 2.5톤 이하의 차량으로 입법취지의 차량과는 해당되지 않음

■ 개선의견

- 고압가스운반자등록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 2.5톤 이하 제외
 - 소형차량에 비해 대형차량의 가스사고 대향화 가능성이 높아,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규모가 큰 대형차량(6톤 이상)만 규제함

현행	개정(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고압가스(LPG 포함)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독성가스 제외) ☐ 탱크컨테이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독성가스 제외) ☐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운반차량 (적재량 2,500 kg 이하 차량 제외) ☐ 탱크컨테이너

10

LPG(프로판)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취급량(50,000KG)으로 PSM규정 조정 건의

■ 소관부처 : 중소기업벤처부

■ 관련법령 :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노동부는 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 도시가스의 공정안전관리(PSM) 보고서 제출대상 취급규정량을 대폭 완화하였음
 - * LPG(액화석유가스)와 동일하던 취급규정량 5,000Kg을 도시가스만 50,000Kg으로 10배 수준으로 완화하였으며 2021.1.16 부터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3조 별표 11 1호 관련)
- LPG(프로판)와 도시가스(메탄)는 물성에 따른 위험성,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안전관리 설비 보유,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LPG(프로판)을 도시가스와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도시가스 업계의 산업체 영업활동(LPG는 위험물)으로 LPG의 부정적 인식 확산
- 도시가스는 대기업에서 공급하지만 LPG공급자는 LPG판매사업자이며 소상공인으로서, LPG판매업은 “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받음
 - * 지정 기간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5년간
- LPG(프로판)을 도시가스와 차별 취급할 경우 대체재 관계에 있는 LPG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총 에너지 투입 효율성, 에너지믹스 최적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개선의견

- 연료용 LPG(프로판)의 PSM 규정량을 도시가스와 동일하게 ‘취급 50,000kg’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품목인 4,500여 LP가스 판매사업자는 요청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내 하이숍입점 관련 지침 마련 및 운영권 계약체계 개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관련법령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하이숍 운영혁신 협약서

■ 현황 및 문제점

-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의 하이숍 입점 지침 부재로 미입점 사례 다수 발생
 - 고속도로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전문 차량용품 구매 불가능
- *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11년 8월 정립된 '하이숍 입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방식 및 임대료 등을 통일하여 운영

< 고속도로 휴게소 내 하이숍 매장 현황 >

구분	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합계
운영 고속도로	30개 노선	16개 노선	46개 노선
하이숍 매장	209개소	8개소	217개소

- 현재의 운영권 계약체계(한시적 운영권 보장·재협상) 및 임대료 지급방식*으로 인한 불안 및 갈등 유발
 - * 하이숍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산정하여 휴게소 운영사 및 한국도로공사에 지불 → 현금매출누락 방지를 위한 감독 시행 중(CCTV 분석, 불시 암행단속 등)
- 민자고속도로휴게소는 식음료서비스 제공 업장이 대부분을 차지, 고속도로 이용자는 워셔액, 체인 등 안전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차량용품 구입이 어려운 상황

[민자고속도로관련 사례]

- 지난 '16년 11월 개통한 제2영동고속도로(총 연장 56km)에 개설된 휴게소 4개소(광주 상 하 / 양평 상 하) 모두 하이숍이 입점하지 못함
 - 휴게소 4개소의 입점매장은 총 62개점으로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점 매장은 58개점(94%)이며 여행 고객용 다양한 잡화물품을 판매하는 곳은 편의점 4개점(6%)에 불과함(편의점 주 판매상품은 다과류, 식음료, 간단한 편의품 위주)
 - 장거리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용품(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충전케이블, 음악, CD/USB 등) 구매가 한정적이며 고속도로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전문 차량용품(워셔액, 강설시 체인, 부동액, 와이퍼, 강수시 발수코팅제) 구매 불가능

■ 개선의견

-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입점 관련 지침 마련하여 설치 운영방식 개선 요청
 - (현행) 도로공사, 운영사, 협동조합 간 3자협약('21년 재계약)
 - (개선) 도로공사에서 협동조합에 일괄임대 후 조합원에 배정
- 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는 협동조합으로 독립된 권한과 지위보장
 - 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는 협동조합으로 독립된 권한과 지위보장
- 임대료 지급방식을 월정액으로 개선, 상호 불신 및 분쟁해소
 - 휴게소 및 하이숍의 연평균 매출액 고려, 정액금액 산출·임대료 지불

- 하이숍 영업간 도로공사의 현장점검 부담해소, 투명한 매출관리 기대
- 설치·운영 및 조합원 관리감독권한·책임 등을 협동조합에 일임 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

12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전담부서 신설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6조

■ 현황 및 문제점

-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에 전담부서가 없이 1개팀(4명)에서 전국 255개 지자체를 관할
- 옥외광고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새로운 정책 개발·시행 및 폭주하는 민원업무 해결 역량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 전국 주요 도로변 및 도심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불법 광고물이 산재해 있으며 점차 그 수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할 지자체의 행정조치는 매우 미흡
 - 기상이변 또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나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기술인력이 없음

■ 개선의견

-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행안부 산하기관에 ‘불법광고물 단속·경비센터’, ‘안전점검·복구지원센터’, ‘민원센터’, ‘교육센터’를 설치·운영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옥외광고정책과’ 신설 필요

13 신고배제 광고물 5제곱미터 허용 제한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1항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면적이 5제곱 이상 광고물에 대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고배제 광고물인 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허가대상) 광고물이

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배제 대상인지 혼란을 초래함

- 현장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빠짐으로써 안전점검의 사각지대 발생
- 신고의무 배제조항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광고물 설치 사례가 많아졌으며 아울러, 부실한 제작·시공으로 인하여 사고율 또한 점차 증가추세임

■ 개선의견

- 신고배제 광고물 5제곱미터 허용 제한
 - 전체 설치광고물에 대해 신고 의무화 또는 안전점검 범위 확대 시행

현행	개정(안)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삭제)
※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삭제하고 단서 정리 - 5제곱미터 이하 광고물도 신고대상에 포함	

14 불법 광고물 양성화 또는 추인 지원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법 제3조

■ 현황 및 문제점

- 불법 옥외광고물은 광고주의 관련 법·규정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기존의 인허가 광고물에 대한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임
- 따라서 지자체의 광고물관리 수량에서 누락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등은 안전점검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선의견

- 불법 광고물을 적법한 광고물로의 양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
 - 제출서류는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옥외광고협회의 확인서, 원색도안은 현황 사진으로 대체
 - 간판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 불법 광고물은 사후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하고, 부적합 광고물은 사고 우려가 없으면 광고물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권고

- 계도기간 이후 관과 민이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후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의 고정광고물로 지정

15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 재난사고 예방 재정지원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매년 몇 차례씩 태풍 및 돌풍을 접하게 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으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비하는 전문기관 및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창립(1970.3.2) 53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에서는 오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오랫동안 무보수 자발적 봉사활동 목적으로 재난방재단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광고물 안전점검 및 관리행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 다만, 영세한 광고사업체가 회원으로 참여 구성하고 있는 옥외광고협회의 특성상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고가의 장비 사용이 불가하고, 자발적 참여에 따른 기술인력 또한 상시 부족한 상태임
 - * 대부분 육안 점검하거나, 저가의 장비 투입·사용으로 고강도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는 실정

■ 개선의견

- 법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재난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립·운영하는 광고물 정비 기금을 활용하여 협회의 재해방재단에 예산 지원 또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시행 건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② (생략) <신설>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풍수해 등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방재 지원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3

Chapter 2. 분야별 소상공인 정책건의

소공인 · 수리서비스 분야

- 1 소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사업 지원
- 2 소형공구상가의 생존권 보장
- 3 귀금속분야 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 제언
- 4 금지금 부가세 면제 건의
- 5 서울 K-주얼리 클러스터 구축
- 6 자동차 정비시장 변화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7 정비업 제외사항 및 조기폐차 대상 조정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 8 자동차정비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적용 확대 건의
- 9 저공해 사업(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보조금지급) 개선방안
- 10 손해보험사 일방적 대금지불 관행 개선 및 철회

1 소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사업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5월 28일「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도·소매, 서비스 분야와 분리해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 11월 기준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42개소를 운영중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소공인들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단법인 한국소공인진흥협회에서는 2016년도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소공인코디네이터'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선정됨('16년 ~ '18년 기준 : 115명 자격증 취득)
 - * 민간자격증 명 : 소공인코디네이터 1,2급 과정
- 또한 소공인코디네이터의 경영진단 품질을 높이기 위한 '소공인 코디네이터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

■ 개선의견

- 2025년도 정부의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에 도소매 및 서비스 분야와 소공인 분야를 구분하여 소공인 분야는 소공인코디네이터 민간자격증 소지자(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실시

2 소형 공구상가의 생존권 보장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법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3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현황 및 문제점

- 공구상가 건물의 노후화 및 주변 상권 재개발 등으로 인해 공구상권 침체 가속화
 -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영등포기계상가,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은 기존 1960~80년대 산업화에 맞춰진 준공업지역으로 국내 산업유통의 메카로써 소부장 뿌리 산업의 대표 집적산업단지 지역임에도, 최근 재개발 이슈 등으로 인해 폐업 또는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 서울 '서남권' 도시대개조, '산업혁신구역' 지정(24.2.27.,서울시)
- 또한 대기업의 산업용품시장 진출에 따른 뿌리산업인 영세 소형공구상가의 영업 영역 침범 우려

■ 개선의견

- 소형 공구상가를 영위 중인 영세소상공인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및 외국 자본의 영세 산업용품 유통업 진출 제재 및 실태파악 필요
-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소형업체들의 집단이주를 위한 대체 집적산업단지 마련 노력 필요
 - 공구상가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업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제조업 근간이 되는 산업인 만큼 집적단지가 필요하며

3 귀금속 분야 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 제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국세청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9,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소득세법, 상 시계 및 귀금속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나, 시계 및 귀금속·보석(시행령별표3의3) 등 판매 시, 대부분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 노출을 기피하고 휴대폰 번호 등 매도 증거를 남기려 하면 매도를 취소함
- 따라서 소매상 입장에는 고객을 다른 매장으로 빼앗길 수 없기에 현금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주얼리산업(금관련업)의 실태
 - 과거 불합리한 제도에 기인하여 부가세 없이 거래되었던 귀금속·보석들에 대해 산업 양성화를 위한 선순환적 제도 필요

■ 개선의견

- 현행 실시되고 있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시 귀금속·보석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부가세 10%를 납부하도록 하면, 귀금속·보석류가 부가세체계를 따르고 최종 소비자에게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약 5천억 원 이상의 부가세 징수가 가능

4 금지금 부가세 면제 건의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국세청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현황 및 문제점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순금의 가격은 전 세계가 동일한 가격에 의하여 형성되며 글로벌 통용화폐로서 사업자가 순금 자체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없음
 - 이에, '02.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특례) 신설하여 금지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으로부터 거래추천을 받은 금지금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음
 - 그러나 현행 부가세법상 우리나라는 금지금 부가세를 재부과하고 있으며, 과세된 금및 고금 또는 밀수금의 순금가액이 이중으로 형성되고 있음
- 또한 현행 부가세제 하에서 既부가세 납부하였던 금을 고금으로 수집하여 주얼리로 생산하여 소비자에 판매할 경우 부가세가 다시 부과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함

■ 개선의견

- 새로운 금 부가세 제도 도입할 필요
 - 금 주얼리 제품의 거래 과정에서 다목적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순금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면세(영세율)를 하고, 제조·총판, 소매 단계마다 새로이 추가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 과세를 하도록 해야 함

예시1. 100만원 짜리 금 반지에 포함된 금값이 90만원, 소매점 마진이 10만원, 제품의 부가세는 금값을 제외한 10만원 마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야 하며, 소매점은 마진 10만원의 10%인 1만원의 부가세만 부과하여야 함

예시2. 제조업체가 45만원하는 금으로 제품화, 소매점에 5만원의 공임을 붙여 50만원에 판매하였다면, 제조업체는 공임 5만원에 대한 부가세 5천원만 부과함

5 서울 K-주얼리 클러스터 구축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종로 일대 주얼리 업체들은 2000년 이후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에 따른 저가 출혈경쟁, 스몰웨딩으로 결혼문화 변화 등으로 상권침체 및 경영 위기에 직면
- 종로 일대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 업체들의 밀집된 상태에서 좁은 작업공간, 열악한 환기시설 등 노후화된 작업환경이 노출되어 있어 생산성 저하, 화재 위험,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 상태
 -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주차 공간 등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도 떨어져 경쟁력 확보 및 관광객 유치에 애로

■ 개선의견

- 서울시 도시제조업 5대 특화 업종의 하나인 주얼리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로 일대에 (가칭)“서울 K-주얼리 클러스터” 구축 필요*
 - 도시형 소공인 지원 및 주얼리 특화산업 관련 원자재 가공 및 제품 생산, 교육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시설 구축
-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중소기업계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검토 필요

6 자동차 정비시장 변화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친환경자동차법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부의 미래차 산업정책은 연구, 개발, 제작, 생산, 제공, 유통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 '23년 2월 기준 친환경자동차종 431,759대 보급, 전체 약 1.7%(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 우리나라 친환경자동차 정비가능 업체는 대부분 자동차 제작사의 직영·협력업체이며 모든 수리가 가능한 업체는 170개 업체에 불과, 보급 속도 대비 자동차 정비 등 사후관리 역량과 개발여건이 현저히 부족하여 심각한 불균형 상태
- 법으로 규정된 자동차 정비 매뉴얼 등을 미제공하는 자동차제작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가 미래차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곤란
 - *「자동차제작사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3호)」

■ 개선의견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한 내연기관·친환경 자동차 정비를 병행할 수 있는 업소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운영하는 것이 필요
 - * 전문정비업소에 대한 정부의 시설·장비 지원으로 전국 약 230여개 지자체별 각 1개의 미래형 정비업소 시범운영
 - 고전압 안전교육 실시, 고전압 안전교육 실시, 클린사업장 조성 등 시설개선 지원, 시설·장비, 소모품, 시설 철거비용 등 폐업 지원,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자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 마련
- 미래차정비교육 관련 교육장소의 접근성 개선(특별, 광역시·도 관청 소재지 교육장소 부재), 교육인원 확대, 교육과정 보완(자동차정비 현장중심 실습교육과정 확대) 등이 필요
 -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위한 기본인 직무·안전교육 및 정비매뉴얼 등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지원 및 제공 의무 강화
- 대기오염물질이 적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 개발을 목표로 집중적인 지원정책 필요
 -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 및 구매 시 지원금 지급 정책 실시

7

정비업 제외사항 및 조기폐차 대상 조정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환경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엔진오일 및 배터리 교환’ 등을 정비업 제외사항으로 규정
 - 사업장 없이 출장서비스를 통해 교환 작업할 경우, 폐유의 비적절한 폐기로 인해 환경오염 유발 우려 증대
 -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폐유, 폐산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수집 및 운반을 별도로 규정
-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정책은 대상차량의 연식만을 기준으로 하며, 주행거리 등 관리 상태 미반영
 - 자동차 소유자 및 소상공인 정비업체들의 어려움 가중
-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및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산업의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불가피
 -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부족

■ 개선의견

- 법 개정을 통해 정비업의 제외사항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 배제
- 매연 발생장치(인젝터, EGR 등)의 의무정비 시행 → 정비를 통한 개선불가 차량에 한정하여 조기 폐차 실시(조기폐차대상 확대)
- 기존 정비업체에 대해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정비를 위한 안전장비 및 시설, 교육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 정비 지원 확대 요청

8

자동차정비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적용 확대 건의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현황 및 문제점

- 現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터.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2조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감면 대상 업종을 종전'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으로 개정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세액 감면 혜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선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감면 대상 업종을 종전'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으로 개정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세액 감면 혜택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 2023. 12. 31.>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 (중략) ---,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하략)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 2023. 12. 31.>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 (중략) ---, 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 (하략) ---

9

저공해 사업(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보조금지급) 개선방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 현황 및 문제점

- 저공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에 의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 시 보조금 지급

- 2023년(1.1.부터 시행)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실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속 실시)

* 조기폐차 물량 132만대(5등급 48만대, 4등급 84만대), 한 대당 보조금 상한액600만원

- 반면, 자동차전문정비업 일감 감소(정비시기가 도래한 차량의 감소로 정비 매출 감소)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폐차 해야 하는 상황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신청 창구가 단일창구(부착지원센터)로 제조업체와 유착문제 발생(설치건당 리베이트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특성상 장착 후 8만km 주행 시 저감장치 필터가 막혀 출력 저하 및 불완전 연소 유발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클리닝이 필수이지만 비용문제로 클리닝을 하지 않고 운전

■ 개선의견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DPF 부착 정책으로 전환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및 조기폐차 일정기한 유예정책 실시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시 특정단체(부착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처럼 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 의무화 및 클리닝 비용 전액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후 8만km 주행 후 배출가스 저감장치 클리닝 의무화 및 클리닝 비용 전액 지원 정책실시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결과를 국토부 정비이력전송으로 처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업무 간소화 및 투명화

■ 기대효과

- 조기폐차 방지(차량 수명 연장)에 따른 자원 낭비 방지

- 전문정비업 일감 증가로 정비 인프라, 일자리 유지

10 손해보험사 일방적 대금지불 관행 개선 및 철회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관련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손해보험사는 자동차유리업자가 청구한 보험 청구 금액을 임의적으로 삭감하고 일방 지급 또는 부지급하는 상황

- 손보사들의 임의 삭감과 면책 결과 및 사유에 대한 미통보, 정비공장으로의 일괄 지급 등 갑질행태

로 창유리 정비 업자들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초래

- 손해보험사별 지역별 불명확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가격 책정 기준으로 수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 '2020.3월 중기부는 손해사정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4대 손해보험사 직권조사(3~6)를 추진하였으나 보험사들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함

■ 개선의견

- 자동차유리업자와 보험사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지급하는 합리적·체계적 결제 시스템으로 보완
 - 올바른 사업방향과 적법한 보수 금액의 현실화 필요
- 보험사별 지역별 일관적인 손해사정 보험금 책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시 적용하도록 관리 감독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4

Chapter 2. 분야별 소상공인 정책건의

소상공인 유통 분야

- 1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포함
-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마련
- 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류 운반 대상 범위 확대
- 4 택배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 5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상 확대 및 전속계약 완화
- 6 형사처벌 받은 영업점 종사자에 대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요구 거부권 신설
- 7 도심권 택배터미널 부지 확보 및 주정차 위반 완화 요청
- 8 담배매출관련 카드수수료 조정
- 9 KT&G의 전자담배 불공정 행위 개선
- 10 담배소매인 면책 근거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이수 조항 신설
- 11 가맹사업법상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가맹중개 추가
- 12 전국 지하(도)상가 육성발전을 위한 대안
- 13 주유소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1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포함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 현황 및 문제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또는 비가맹점(마트 등)은 매출확대를 위해 환전금액 한도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상품권을 수집하여 한도 이내(600만원)는 상인회를 통해 현금화,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가맹점주가 직접 환전은행에 가서 환전(가맹점별 한도범위내에서)해야하나 가맹점주나 비가맹점은 매출누락을 통한 세금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거래처(농수산물의 경우 중도매인)에 결제대금으로 지불
-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거래시 구매자의 온누리상품권 결재를 기피할 수 없으며, 불법 할인업체를 통해 할인(일명, '깡')하여 현금화시킬 수 밖에 없음
 -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7,631명중 청과부류 과일중도매인 677명을 대상으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간 유통금액은 328억 5천만원이며, 현재 보유중인 금액은 91억 5천만원임

■ 개선의견

-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금전적 손실과 범법자(과태료 2천만원 이하)를 막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과정이 반드시 개선되거나 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에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포함토록 건의
 -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위한 기본인 직무·안전교육 및 정비메뉴얼 등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지원 및 제공 의무 강화
- 대기오염물질이 적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 개발을 목표로 집중적인 지원정책 필요
 -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 및 구매 시 지원금 지급 정책 실시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물류 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 마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건립 운영되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공동구매, 배송·판매)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음
- 유통·물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전국망 운용이 필수지만 '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로 건립·지원비용이 이전됨에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어떠한 곳에서도 전국망 운영 관련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

■ 개선의견

-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 법 정비를 통한 물류 전국망 구현과 물류센터 지원 확대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 개정 등

3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류 운반 대상 범위 확대

■ 소관부처 : 국세청

■ 관련법령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은 2016년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이용 중소기업의 주류 직접 운반 규정 신설
 - 이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주류중개업면허증을 발급받아 물류센터를 방문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주류를 낮은 수수료로 공급해 왔음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 요령」으로 관리 운영 중
- 그러나 지난해 동 규정 개정을 통해 주류를 직접 운반할 수 있는 대상을 '출자 조합원'으로 한정하면서, 물류센터 이용 회원 등 출자 조합원 외 물류센터 이용자의 주류 직접 운반이 불가능해짐
 - 이는 2016년 동 규정 개정 사유인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며, 조합 가입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 발생

<현장 사례 : 수원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현황('23.12월 기준) >

▷ (전체 조합원 수) 509명 (출자 조합원 78명, 물류센터 이용 회원 431명)

▷ (주류 취급 인원) 434명 (출자 조합원 78명, 물류센터 이용 회원 356명)

☞ 규정 개정에 따라 356명의 주류직접 운반이 불가능해진 상황

■ 개선의견

-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는 낮은 수수료로 상품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음. 또한 물류센터 이용 대상을 유통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의 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기본 규정의 취지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이용 대상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정 개

정 필요(「주세처리사무규정」 제77조제5항에 취급 소상공인 확대 문구 추가)

현행	개정안
제77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⑤ 주류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 후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제77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⑤ 주류도매업자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라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주류소매업자는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택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법령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의 무분별한 택배사업 진출로 인한 출혈 경쟁으로 택배 단가 인하 및 택배 종사자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인터넷 판매사업자(자사물 운영)들 대상 대형 플랫폼의 갑질로 인해 속수무책인 상황
- 또한 특정 택배사업자의 경우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가 참여주체로 합의한 사회적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택배기사의 업무부담 및 택배 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음
 - 주 60시간 노동 제한·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매년 8월 14일 택배 없는 날·공휴일 적용을 모두 무시

■ 개선의견

- 택배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사업 지원 대상 포함
 - 택배업을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사업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 시켜 대기업의 진입 및 확정 제한을 통해 갑질 및 횡보를 막고 건전하고 안전한 택배사업환경 조성 필요

5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상 확대 및 전속계약 완화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택배용 화물 자동차운송사업허가요령 제4조

■ 현황 및 문제점

- 허가 대상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 하는 개별 택배기사와 택배사업자(직계약자)는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배번호)를 받으려는 택배기사는 택배용 화물 자동차운송사업허가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1호) 제4조에 의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직계약서(직영)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속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속요건 완화로 도서 산간, 외곽지역 통합배송 및 당일배송 가능, 터미널 하역장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소비자 편리도모

■ 개선의견

- 법인사업자인 영업점(대리점)은 제외하고 있으나 허가대상 확대 필요
-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개정으로 기존 택배기사의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된 바 있으므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배번호) 시 전속계약(3자계약) 요건의 완화가 필요

6 형사처벌 받은 영업점 종사자에 대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요구 거부권 신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

■ 현황 및 문제점

- 택배기사가 위탁계약기간 중 불법쟁의행위 등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거 중도 해지 및 계약종료 제한으로 6년간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
 -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절도죄(형법 제329조)등 형사 판결 등 사례 존재
- 「택배운송위탁표준계약」 일방당사자인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가 계약기간 중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절러 벌금 등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항제1호 각목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1호 각 목에 따른 죄 등 5개 유형 범죄를 제외하고는 택배 집배송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제한이 없음
 - 영업점 소속 종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생물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6년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거 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종사자간 상호 불신이 초래

- 영업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영업점 대표자의 신뢰가 침해되는 등 대리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의견

- 가격경쟁 등 어려운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택배기사에 대해 「택배운송위수탁표준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요청
- 형사상 유죄판결시 「택배운송위수탁표준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4호 신설/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추가)

현행	개정안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 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 <신 설> ② ~ ③ (생략)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 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 4.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 사유) 5.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고객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 및 절도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7 도심권 택배터미널 부지 확보 및 주정차 위반 완화 요청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현황 및 문제점

- 택배물량 및 이용횟수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또한 신규 아파트 지상출입 거부 및 주차비 징수, 승강기 사용료 부과로 입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주정차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택배물품 배송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발생 되고 있는 바, 배송 중 불가피한 사유로 주정차를 하게 되어 통지서를 받게 된 것으로 단속 완화가 필요함

■ 개선의견

-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 예외 허용, 점선은 시간허용(5분 이내) 하되 이동 중 단속은 제외하도록 규제 완화
 - 출·퇴근 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오후 3-4시) 장소 허용으로 마찰완화
- 도심권 택배터미널 부지 확보
 - 택배는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공공시설 등 입지요건과 같이 거리, 시간, 비용등을 감안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터미널(센터) 확보로 소비자 편리 도모

8 담배 매출 관련 카드수수료 조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 현황 및 문제점

- 담배는 세금이 73.8%이나, 마진율은 9.56%에 불과함 품목임
 - 담배제품 제세부담금 구조

1갑당 판매가격	출고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세
4,500 (100%)	1,182 (26.2%)	1,007 (22.3%)	443 (9.8%)	841 (18.7%)	594 (13.2%)	443 (9.8%)

- 소상공인 마진율 9.56% / 총세금 3,318원(73.8%) *부가세 제외시 2,875원(64%)
- (문제점) 담배값의 73.8% 육박하는 세금부분에까지 카드수수료 1.5%가 적용되어, 월세 및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담배 4,500원 x 신용카드수수료 1.5% = 약 67원 중
세금 3,318원 x 신용카드수수료 1.5% = 약 50원(소상공인이 부담)
- 총매출액 기준 카드수수료 1.5% 부과로 인한 부담 과중으로 실질 소득 감소

■ 개선의견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총매출액 중 제세금 비중이 높은 물품의 경우 카드수수료 변경적용 요청
 - 현행 1.5% → 0.54% 적용(부가세 제외 세금 64% 비율 만큼 축소) 요청
 -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액 규모 평가 제외

9 KT&G의 전자담배 불공정 행위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 현황 및 문제점

- KT&G는 편의점주들에게 전자담배 디바이스와 스틱을 낮은 마진율로 공급함
 - 전자 담배 디바이스 마진율은 6.1%, 전자담배 스틱 마진율은 9%
 - 특히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카드수수료까지 공제하면 마진율은 평균 4.6%임
- 반면 KT&G 본사는 담배사업으로만 마진율(영업이익율)이 26.4%에 달하며, '23년 기준 담배 매출액은 3조6,190억원, 영업이익액은 9,771억원임
 - 이는 편의점주의 전자담배 디바이스 마진율인 4.6%에 비해 5.4배임
 - KT&G는 편의점주에게 6.1%(카드수수료 제외 시 4.6%)라는 낮은 마진율을제공하면서, 소비자 판촉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고 있음
 - 이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개선의견

- 5만여개 가맹점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KT&G에게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음

10 담배소매인 면책 근거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이수 조항 신설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제28조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적발 사례가 연평균 1,100건 이상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담배 구매 후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등 소매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 면세품으로 공급된 담배를 국내시장에 유통, 불법 제조한 수제담배를 판매한 수제담배업자 등 불법 담배 판매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는 정상적인 담배 판매 시장을 교란하고 세수 확보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소매인은 소매인 지정 및 취소 기준, 담배 판매 기준, 광고 및 판촉 기준 등 소매인

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것에 비해 담배소매인의 면책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로 담배소매인만 모든 책임을 지고 있음

■ 개선의견

- 이에 면책 근거 강화를 위한 담배소매인의 정기적 교육이 절실한 현실로 담배소매인 대상 의무 교육 이수 조항 신설 필요
 - 현행 「담배사업법」 내, 담배 유통 질서 확립 및 영세 소매인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 판매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담배소매인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미이수자에게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담배 판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2. · 3. (생 략)	제17조의2(소매인에 대한 교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담배의 판매 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담배 판매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 : 소매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2.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 3. (현행 제1호 및 2호와 같음)

※ 소매인에 대한 교육 → 교육기관 지정 → 교육시기 명시 → 형벌규정

11 가맹사업법상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가맹중개 추가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는 검증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들이 예비창업자에게 무분별한 창업권유가 성행
 -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 및 불합리한 가맹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프랜차이즈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예비창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의 특성상 예비창업자의 다수가 자영업에 대한 경험이 미미하거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또는 컨설팅업체의 정보에 의존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이를 신뢰하고 창업한 이후 본부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운영상의 현실이 상이하여 초기투자 비용의 상실, 영업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태

■ 개선의견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상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자 간 ‘가맹중개’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중개를 추가하여 법적으로 중개업무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가맹사업법」 제28조에 가맹중개 추가)

현행	개정안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7.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중개

12 전국 지하(도)상가 육성발전을 위한 대안

■ 소관부처 : 행안부, 국토부, 중기부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하철 1호선을 필두로 주요 역마다 민간자본으로 서울시장의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상점가가 들어서 됨
 - 정부가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공유지인 지하철역사 중심의 지하도상가를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만들고 20년간 사용 후 국가가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택하여 많은 상점가를 만들
- 이런 상점가들이 40여년간 이어져 낙후된 시설이 되어가고, 상권의 트렌드에 뒤떨어져 상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

■ 개선의견

- 행안부, 국토부, 중기부로 이원화되어있는 소관부처를 시장기능에 맞게 소상공인관련 담당부처로 일원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대상으로써 지상상가와 지하상가는 동일한 관리주체의 관리와 지원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 전국지하(도)상가 육성발전 진흥센터 설립
 - 지하(도)상가의 역사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전국의 지하(도)상가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여 육성 발전시키게 하는 독립된 통합기구 설립
 -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영행태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원화하여 민원사항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

13 주유소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 현황 및 문제점

- 주유소업종은 정부의 물가관리품목에 포함되어 정부지침에 따라 1985.8월부터 현재까지 1.5%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적용
-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주유소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징세협력비용으로 국가를 대신해 부담
 - 주유소업종의 명목상 수수료율은 1.5%이나, 세금부문을 제외한 순매출액 기준 실효수수료는 3.2%로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담

■ 개선의견

- 주유소업종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현행 1.5% → 0.7%로 인하
- 고율의 세금부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정부 부담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5

Chapter 2. 분야별 소상공인 정책건의

의료 · 위생 · 뷰티 분야

- 1 안경사 업무범위 개정 및 면허미신고자 관리 방안 마련
- 2 의료기기 부당이득(리베이트) 취득금지
- 3 1인다업소 처벌 강화 조항
- 4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5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
- 6 뷰티산업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7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종목(기능장) 신설 지원
- 8 의료기기와 피부미용기기 분리 및 마사지의 범위 확대
- 9 피부미용마사지 등 안마시술에 대한 기준 명확화
- 10 문신업종 및 관련 산업(반영구화장, 타투, SMP) 등의 양성화 방안 마련
- 11 문신용 기기 및 바늘에 대한 의료기기 분류규정 검토

1 안경사 업무 범위 개정 및 면허미신고자 관리 방안 마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8조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업무 범위는 ‘굴절검사(자각적,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한 업무’ 명시
 -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경사의 업무 범위 불명확하게 명시
-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 미이수 및 면허신고 미이행 등으로 안경사에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신규 영업장 개설시 면허상태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규 개설 가능한 상황
 - 관련 법률 위반 및 국민 안(眼)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 필요

■ 개선의견

-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 역할 재정립
 - 안경사 정의를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등을 시행하여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와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개정
- 안경사에 대한 관리 체계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한 개설허가 전 보수교육 이수 여부 및 면허효력 상태 확인 의무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경사에 대한 관리 체계화

2 의료기기 부당이득(리베이트) 취득금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의료법 제23조의5, 의료기사법 제14조 및 제30조

■ 현황 및 문제점

- 안경사 관련 리베이트 등 부당이득 처벌 규정의 부재
 -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는 법령에 근거 적법하게 처분되고 있으나 안경사는 리베이트 및 유사행위가 안경업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제재할 법령이 없음
- 과도한 리베이트 행위(백DC)로 안경원간 가격차 심화, 유통질서 심화
 - 안경원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금액에 따라 차후 할인된 금액만큼 되돌려주는 일명 ‘백DC’로

안경원별로 제품의 판매가격이 달라짐은 물론 안경원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개선의견

- 리베이트 제공자·취득자에 대한 동시 처벌(쌍벌제도) 도입
 - 리베이트 제공자뿐 만이 아닌 취득자(안경사)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진행하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나아가 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도 적용하여 재발 방지
- ‘백DC’ 할인기간 및 금액에 따른 처분수위 결정
 - 구매한 금액만큼 할인율을 적용받는 ‘백DC’를 적용받은 기간, 기간동안 수취한 부당이득에 비례하여 처분수위를 결정할 필요
 -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하는 조항 신설

3 1인 다업소 처벌 강화 조항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의료기사법 제30조 및 제31조

■ 현황 및 문제점

- 안경사 1인다업소 운영시 처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12조 제1항에는 안경사는 1개의 안경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1인이 1개 이상의 안경원을 개설할 경우 동법 제31조(벌칙)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처벌수위의 경미함으로 인하여 위법행위의 경각심 부족
 -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거 1명의 의료인이 1개 이상의 의료시설을 개설할 경우 동법 제87조의2 2항 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면, 안경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그 수위가 경미함.
 - 이에 자본이 많은 기업에서 벌금을 감수하고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인 중소형 안경원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맞이함

■ 개선의견

- 의료기사법상의 1인다업소 처벌수위 강화
 - 1인 다업소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 1인다업소 행위에 대한 안경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준법 질서를 바로세우고 기업체의 외부자본 유입 방지로 소상공인의 영업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현황 및 문제점

- 같은 공중위생영업자인데 유독 기존영업자에 대하여만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영업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미용업소에서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하여도 이용업소표시등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 이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업무범위가 개정되지 않아 NCS에서 능력단위에 있는 대로 현실에 맞게 법 개정 필요

■ 개선의견

- 기존영업자나 신규영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미용업소에서 이용업소표시등을 사용하고 있어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할 수 없는 실정에 따라 조속히 시행규칙상에 제정 필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별로 이용업소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가발, 헤어타투 등)를 업무범위에 삽입

5 이용업소표시 등의 사용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 현황 및 문제점

- 1946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용업소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삼색(청백홍) 싸인볼은 이용업소를 상징하는 이용업소표시등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 등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기준에 이 법을 위반 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현실적으로 미용업소에서 무분별하게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 미용실에서 이용업소표시 등(유사 싸인볼)을 우후죽순처럼 확대되어 설치하고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련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 금액 90만원

■ 개선의견

- 미용업소에서 이용업소표시등(유사 싸인볼 포함)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과 질서를 지켜 상호 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
 - 철거가 안 될 시에는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

6 뷰티산업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제33조, 뷰티산업진흥조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 뷰티산업은 세계적으로 기술과 그 역량을 인정받고, 시장규모가 7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체계적·건설적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뷰티산업의 재정적·중앙정부*지원근거 전무)
 -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 및 처벌 조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있으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지원 법률은 전무한 상황
 - * 각 지자체별로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두고 있으나 법률제정이 미비하여 일원화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현재 미용사 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중으로, 본래 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즉시 미용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력 미달로 인해 개별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고용하여 1~2년간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전문인력으로 육성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개선의견

- 「뷰티산업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별도법 제정을 통한 뷰티산업 발전의 제도적 정치 마련
-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미용사 국가자격검정’업무를 대한미용사회로 이관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자 양성

7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종목(기능장) 신설지원 요청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미용업의 전공별 세분화* 이후 미용사 국가자격증은 메이크업·네일까지 세분화(네일:2014년, 메이크업:2016년)
*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가 우선 추진한 미용관련 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 과제
- 국가자격증 세분화 이후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서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기능인력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전문가 필요성 증가
- 현재 시점에서 이미 9년 이상의 필요 실무 경력 보유자가 다수임은 물론, 메이크업 기준 2016년도 기능사 배출 이후 7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기능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충분히 배양된 상태
- K-뷰티로 국가 브랜드 제고 및 이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분야임을 고려하고 업계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기능장 자격증’의 신설 필요

< 기능장 취득자격 요건 >

구분		필요경력
실무경력만 있을 경우		9년
자격	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없음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5년
	기능사 취득자	7년

* 실무경력은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만 인정.

■ 개선의견

- 메이크업·네일 업종의 국가 기능장 자격 신설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에 자격 신설을 위한 지원 요청

8 의료기기와 피부미용기기 분리 및 마사지의 범위 확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현황 및 문제점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의되고, 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여 업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음
- 마사지(시각장애인영역), 경락 등의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못하며, 피부관리 시 마사지 관리 여부에 따라 카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불법자 양산
 - 1300만 관광입국 시대에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불법으로 정의한 것은 관광산업과 뷰티산업의 역행이라 볼 수 있음

■ 개선의견

- 피부샵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는 미용기기로 분리
 - 식약처에서 18개 항목에 해당하는 기기는 규제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됨
 - 승인을 받을 때 화장품도포 외에 주름개선이나 미백, 바디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필요
-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피부관리사가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법적기능 회복

9 피부미용마사지 등 안마시술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 현황 및 문제점

-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독점시키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 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 *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헌재 2021. 12. 23. 2019헌마656, 판례집 33-2, 870
- 마사지와 안마를 구분하지 않고, 안마사에 대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데 비해 피부관리에 의한 ‘피부미용 마사지’마저 안마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피부관리숍의 피부마사지도 비안마사들에 의한 행위로 규제됨
 - 관광객 1700만명 이상 되는 해외 관광객수에 비해 마사지를 시각장애인만 하게 하는 것은 공급의 불균형으로 내수시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개선의견

- 피부미용마사지 등 안마시술에 대한 기준 명확화 및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독점규정 완화의 필요성
 - 스포츠마사지나 피부미용마사지 등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안마의 경계가 모호하여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구제할 필요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의료법 제27조

■ 현황 및 문제점

- 문신과 관련된 국내법은 없으나 법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 없이 문신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중위생상의 문제를 의료행위라 간주하고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상황
 - 최근 5년간 타투 종사자가 10배로 늘어났으나 정부나 국회에서의 양성화 및 법제화 추진은 부진한 상황이며 문신사들의 영업행위가 불법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악용한 2차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의료법>

제2조(의료인)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문신기기 등 관련 제조사업자는 의료기기 제조 인허가 부담과 문제점으로 해외로 기술을 넘기고 정작 국내에서는 밀수 등의 방법으로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상황이 반복됨

■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특례의 전략사업으로써의 우선허용하여 육성방안을 마련
- 반영구화장, 타투, SMP(두피문신) 등 문신업종 및 관련 기술의 안전성 실증과 관련한 산업 양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화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법령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법원이 정의한 現상황에서 문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정이 없이 탁상행정(식약처는 문신기와 바늘을 사용 목적이 상이한 전문의료기기로 분류)으로 문신기기를 치료의 목적을 갖는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취급됨

- 인허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적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해외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 식약처는 문신관련 제조 인허가에 있어 문신기 및 문신바늘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사용 목적이 상이하고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기기로 편입하여 GMP인증을 요구하는 상황
 - 국내 대부분의 문신기기 제조/수입/유통사업자들은 의료기기 GMP인증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여 인허가를 받아 유통하고 있으나 경쟁사업자의 잦은 신고와 단속으로 국내 문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해외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개선의견

- 문신기와 문신바늘을 명확히 정의하여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고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
 - ① 문신용 바늘에 허가 기준 신설(GMP 1등급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
 - ② 문신기는 인체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GMP 1등급(신고사항)으로 재분류 (전자파 인증으로 제품의 인허가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정안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 A64040.02 의료용 체내 표시기[2] Marker, surgical, internal 인체 내부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인체 삽입형, 체내 투여형 및 문신기 등 [GMP 2등급]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일부 삭제) - A64040.02 의료용 체내 표시기[3] Marker, surgical, internal 인체 내부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인체 삽입형, 체내 투여형 및 문신기 등 (신설) - A64040.03 문신기 Marker 문신바늘을 끼우거나 고정하여 인체 피부에 문신을 할수 있게 만든 기구 또는 기계장치 등
- A53040.01 재사용가능 천자침[1] Needle, puncture, reusable 피부나 조직에 가는 침을 삽입하여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별균성의 가는 침으로서 사용전에 멸균한다. [GMP 1등급] - A53040.02 일회용 천자침[2] Needle, puncture, single-use 피부나 조직에 가는 침을 삽입하여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는 침으로서 일회용이다. 단, 경막외강 또는 척수에 사용되는 침은 여기서 제외한다. [GMP 2등급]	(신설) - A53040.03 일회용 문신바늘[3] Needle, puncture, single-use 인체 피부에 문신을 새길 때 사용하는 가는 침으로서 일회용이다.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6

Chapter 2. 분야별 소상공인 정책건의

농업 · 식품 분야

- 1 식자재마트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면적기준 강화 및 계란이력 전산신고제 개선
- 2 등급판정란 제도개선
- 3 난각 농장고유번호 한글표기로 변경
- 4 꽃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구축
- 5 재사용 화환표시 대상 지정 변경 및 우수회원 선정 육성
- 6 꽃시장의 도·소매 분리
- 7 공원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
- 8 제과점업 E9 비자 확대로 인력확충 및 적합한 영업신고 의무화
- 9 제과점영업 자격증 소지자 매장운영 요청
- 10 한국베이커리쇼 대통령상 신설
- 11 조리 분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 12 식품위생교육 자격요건 변경 및 수입팔 배정 기준 마련

1

식자재마트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면적기준 강화 및 계란이력 전산신고제 개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12조의3

■ 현황 및 문제점

- 3,000㎡이하 중형 식자재마트들이 “표준계약서 작성의무에서 제외”되어 갑질 성행
 - 빈번한 세일행사에 원가이하 납품 강요, 신규 입점비 과다 요구, 오픈행사용 계란 저가 납품 요구, 부당한 반품 요구 등
- '22.1월부터 시행된 계란이력제는 난각 표시정보를 이력번호로 대체하고 거래내역 신고를 ‘온라인 전산신고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중이나 식용란수집판매업이 대부분 소규모이고, 인력 또한 고령화되어 온라인 전산신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의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대규모 점포” 기준을 현재 매장면적 3,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조정
 - 매장면적 1,000㎡이상 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규정 부여(법제화)
-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조항 삽입
- 난각에 10자리 표시정보로 이력제 대체(온라인 신고 폐기)
 - 이력제 본연의 취지는 이미 계란껍데기 10자리 숫자로 납품업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2

등급판정란 제도개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품품질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법령 : 축산물이력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등급판정 계란은 전체 약 171.4억개 대비 6.9%인 11.9억개 이지만 실제로 데이터에 잡히지 않고 불법 유통되는 등급란까지 포함하면 몇 배의 계란이 등급란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자체 등급판정사 2명을 두고 등급판정 G.P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인건비, 수수료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데, 영세한 전국 산란계농장 944곳, 전국 3,100명의 계란유통 소상공인 대부분은 등급계란 판정제도에 참여하지 못함
 - 1등급 출현 비율이 높은 20~40주령 사이의 신계군에서 생산된 계란을 선별하여 주로 대기업에서

고가난가로 판매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계란은 소상공인들이 취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좋은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일반 계란에 등급을 부여하여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좋은 계란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불공평을 초래

■ 개선의견

- 등급판정제 폐지 또는 등급판정 의무 도입 등의 등급판정란 제도개선 필요
 - 1등급 계란 취급업체가 대부분 대기업군에서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계란 등급판정 제도를 보완
 - 전체 국민이 공평하게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 섭취 기회 부여

3 난각 농장고유번호 한글표기로 변경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달걀껍데기에 표기되는 생산자고유번호(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는 영문과 숫자가 조합된 5자리로 식별되고 있으나,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및 식약처에 접속하여 고유번호를 검색해야 생산농장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고유번호가 영어와 숫자로 코드화 되어있어 식별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식용란 수집판매업 현장에서 농장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면 계란을 식별하기 더 편리하여 작업 효율성이 향상되고, 혹시라도 있을 타 농장 계란에 혼입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임

■ 개선의견

- 난각 표시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중 농장명 부분을 영문에서 한글로 표기
 - 농장명이 한글로 표기되면 현장 식별성이 강화되어 생산농장을 소비자가 계란구입 현장에서 눈으로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음
 - (현행) : 0213 M3FDS 2 → (변경) : 0213 한국FDS 2

현행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2(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2(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 0213 M3FDS 2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 0213 한국FDS 2

4 꽃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구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상점의 일반인 자유 출입 및 경매참여 등을 통한 꽃 구매로 소규모 화훼 사업장의 매출감소 및 꽃 가격 변동으로 경영악화
 - 국외 화훼도매시장의 경우 소규모 화훼 사업장의 보호 및 화훼의 수급 조절과 가격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자유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세계 화훼도매시장 현황>

미국	12시 시장오픈 (사업자등록 후, 명세서 거래) 오전 8시 이후 현금거래 가능 (일반인구매)
네덜란드	경매권 등록자체가 매우 엄격함 일반인 절대 구매불가 (단, 시장투어 가능)
일본	주차장 진입 불가, 경매권 취득 사전 허가 (출입스티커)
대만	주차장 진입 불가

- 또한, 비과세 품목임에도 카드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요구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 사례 발생

■ 개선의견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상 관련 조항 신설 및 제도 개선 건의
 - 출입증(등록증) 구분 등을 통한 일반인의 출입제한, 도매시장의 카드결제 일반화, 상품의 등급제 표시, 사업자등록 요건 강화 등

5 재사용 화환표시 대상 지정 변경 및 우수회원 선정 육성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2조

■ 현황 및 문제점

-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포함한 「화훼산업법」이 시행 중이나(2020.8.), 현장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실효성 부족, 화환 반입금지 장소 증가 및 조화 화환 사용 등 화훼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 발생
 - * 23년도 발의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모든 화환’에 대한 정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민홍철(23.3.10.), 김도읍의원(23.3.15) 대표 발의)
 - 모든 화환에 대해 ‘화환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화환 유통 업체에 과중한 부담 부여

■ 개선의견

- 재사용 화환표시 및 고지 대상에 대한 지정변경 필요
 - ‘정품화환’기준을 ‘생화와 조화의 비율 기준’등을 포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정품화환’이 아닌 화환에 대해 ‘재사용화환’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단속
 - 화환은 화원이 직접 제작하기보다 공장에 위탁하는 실정으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유통하는 곳으로 지정하기보다 재사용 화환을 직접 제작하는 곳에서 고지할 필요

현행	개정안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수화원 선정과 육성을 위한 기관, 단체지원 필요

6 꽃시장의 도·소매 분리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화훼산업법

■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에 일반 소비자들의 빈번한 출입 및 경매참여 등을 통한 꽃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골목상권의 소규모 꽃집들은 경쟁력을 잃고 매출 감소 및 꼭 가격 변동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폐업하는 실정
- 양재 꽃시장의 경우 센터의 자체적인 소매업체 입장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

[양재 꽃시장 새벽 소매업체 입장제한]

- 1) 매일 새벽 3시부터 개장 도매업체는 새벽 3시부터 정오까지 영업
- 2) 소매업체는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영업 도매 구매를 원하는 개인은 새벽 5시부터 입장 가능 새벽 5시 이전에는 개인 입장이 불가
- 3) 도매업체는 소량 판매 불가 소매업체는 소량 판매 가능

■ 개선의견

- 도매시장 출입을 사업등록을 한 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제한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을 두거나 출입 시

간대 별 가격을 조절, 판매할 수 있도록 건의

- 1안) 폐점 3시간 전은 일반인 출입구매 가능 시간
- 2안) 월수금 사업자 구매일 / 화목토 일반인 구매일

7 공원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관련법령 : 국립묘지법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무덤 헌화용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분위기와 조화 근절 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작 12개 국립묘지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
 -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에 견줘 오래 유지되고 싸다는 장점 때문에 연간 2,200~2,600t이나 소비되는 상황
 - 또한 오랫동안 햇볕을 받으면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폐기하려고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
- * 플라스틱 조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이 2022년 경남 김해 지역 공원묘지들에서 시작되어 충청·경기 지역으로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최근 ‘친환경 소재 조화 교체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등 국립묘지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으나, 근거 기준이 전무하여 강제성이 결여된 상황

■ 개선의견

- 플라스틱 조화를 무덤에 헌화하지 말자는 운동의 전국적 빠른 확산을 위해 ‘국립묘지 플라스틱 조화 근절 정책’을 시행할 근거규정 마련 필요

8 제과점업 E9 비자 확대로 인력확충 및 적합한 영업신고 의무화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제과점업의 경우 일반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하는 단순 서빙, 설거지 업무와 다르게 업무교육 기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고, 기피 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식품접객업 특성상 제과점 운영을 위한 교육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외식업중앙회 혹은 휴게음식업중앙회의 위생교육을 수료 후 영업신고를 하고 있음
- 제과·제빵 관련 학과 졸업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 상승 및 젊은 층의 일자리 기피현상으로 제과점 업주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제과점업이 아닌 곳에서도 오븐과 반죽 기계를 사용하여 비위생적으로 빵을 생산하고 판매하여도 위생감독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

■ 개선의견

-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원재료 상승으로 제과점 업주들의 생계가 다른 업종보다 위태로운 상황으로 E9 비자 확대하여 인력확충
- 오븐기계와 반죽기계 등을 사용하여 빵을 판매할 경우, 현재 업종별 교육을 하고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제과점업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제과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담당 유관기관 확대 및 의무화
- 전국17개 광역지회, 222개 기초지역 지부('24년 2월 기준)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활용하여 교육 및 인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9 제과점영업 자격증 소지자 매장운영 요청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과점 등의 업소는 관련 자격증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음
- 현재 제과점 매장을 차리는 데에는 제과/제빵 관련 자격증 취득 유무와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무분별한 매장 확장의 원인이 되어왔음
- 이로 인해 제과/제빵에 대한 무자격자가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식품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제과점 운영 실패 및 폐업하는 사례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급증할 경우 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 개선의견

- 미용실 또는 세탁소처럼 자격증 소지자가 매장을 운영하듯이 국민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제과점업의 경우, 당연히 제과/제빵자격증 취득 후 교육을 이수한 경력자가 제과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요청
- 식생활 개선 및 젊은 층의 식단 서구화로 인해 향후 베이커리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업종 종사가 매장을 운영함

10 한국베이커리쇼 대통령상 신설 및 제과점영업 업종분류 개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법령 : 정부표창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국제베이커리쇼(협회에서 주관)는 한국 최대 베이커리 기능경기대회경기로 1983년 이래로 40년 가까이 전통을 이어온 행사
 - 참가선수 500여 명, 참가업체 300여개 업체(제과기계, 소도구, 원부재료업체 등), 참관객 200,000여명(해외관람객 3,000여 명)으로 국제적으로 큰 규모의 행사임에도 대통령상시상 부재*
 - * 현재 참가선수 약 500여 명 중 최우수 수상자에게 정부시상(국무총리상)을 해오고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빵을 주재료로 하는 패스트푸드 및 아이스크림류 등을 제과점영업이 아닌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분류하여, 편의점, 팬시점, 커피숍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여 식품위생에 문제가 발생
 - 밀가루와 우유를 기본으로 하는 빵류(케익, 경주빵, 호두과자) 및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등은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적 주의가 필요함

■ 개선의견

-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글로벌 행사로 발돋움한 만큼, 해외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및 제과기술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한국제과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상 신설 요청
- 빵을 주재료로 하는 전문점(샌드위치, 피자, 햄버거, 도너츠, 케익, 경주빵전문점 등)등이 제과점영업으로 분류되도록 법률 개정

11 조리 분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현황 및 문제점

- 음식문화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신기술 관련 부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3D업종에 속하는 외식산업은 조리관련학과 졸업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회피하여 외국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기술인들이 없어 음식문화 전수가 안 되고 있음

■ 개선의견

- 조리분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 조리분야가 일반훈련 및 신기술특화훈련을 할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
- 사업장 내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및 노하우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으로 선정 필요

12 식품위생교육 자격요건 변경 및 수입팔 배정 기준 마련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8조,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9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을 받게 되면 20%의 세율을 적용 받아 TRQ 수입권구매*참가 가능
 - 주로 대기업 위주로 해외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영세소상공인은 저장공간, 자금운영 등 여건 부족으로 가공용 수입팔 수입권구매도 참여 불가
 - * 현재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고추 · 마늘 · 양파 · 생강 · 참깨, 오렌지 · 감귤류 등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제9조에 의하면 교육장소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써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기관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아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 * 소상공인연합회(중소벤처기업부설립인가)는 전국 17개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중

■ 개선의견

-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영세소상공인 우선 공급 방식 조정 등 기타가공용 곡물(수입팔 등) 배정 기준 마련
- 「식품위생법상」상 교육내용, 교육지도자, 교육장소 등 필수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 위생교육전문기관식품’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행정규칙의 개정 요청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

7

Chapter 2. 분야별 소상공인 정책건의

문화 · 여가 분야

- 1 숙박대전 숙박쿠폰을 플랫폼 중심에서 영세 숙박업 중심으로 전환
- 2 소상공인(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숙박업종 개선
- 3 게임텔 불법 영업 근절
- 4 소상공인 여행사 경영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 5 여행업자 자격 요건 강화 및 허가제도 도입
- 6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 7 대리운전 고용 산재 보험료 부과의 근거 법령 오류에 따른 실태 조사 및 변경 요청
- 8 대리운전업계 대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9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 의무화
- 10 전통복식 및 전통문화 공간지원
- 11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및 루시법 철회
- 12 반려견 등록시스템 개선
- 13 동물보호법 중 위탁관리업 개선
- 14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완화

1

숙박대전 숙박쿠폰을 플랫폼 중심에서 영세 숙박업 중심으로 전환

■ 소관부처 :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 현황 및 문제점

- 내수경기 활성화와 숙박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숙박대전을 진행하면서 수십여역원의 숙박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숙박쿠폰을 숙박플랫폼 및 여행사 중심으로 배포 중으로, 플랫폼에 종속되고 하고 일부 숙박업이 소외된다는 지적
 - 2024년 경제정책방향(민생토론회, 1.4.) 중 내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대상 숙박할인권 배포(45만장)가 포함
 - 2024년 설민생안정대책(1.16.)에 따라 설연휴(2.7.~2.25.) 및 2~3월(2.27.~3.31.) 20만장, 6월 25만장 배포 완료, 추석민생안정대책 50만장 배포(8.27.~11.17.)
- 특히, 숙박대전 할인쿠폰이 정부가 아닌 대행업체인 숙박플랫폼 및 여행플랫폼을 가입한 회원 중심으로 발행
 - 숙박플랫폼의 경우 전국 10만여개의 숙박업소중 50%정도 가입어 있으며 나머지 50%는 플랫폼에 가입을 하지 않아 더욱 어려워진 상황

■ 개선의견

- 쿠폰 대상 지역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비수도권과 발행량·할인폭 차이를 두거나, 숙박시설 유형별로 사용 가능 여부의 제한을 두는 등 개선 대책 필요
 - (문체부)의 숙박쿠폰 발행시 OTA를 공모하고 이를 통한 쿠폰배포 방식에서 영세 숙박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 다양화
 - (카드사)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 내 숙박업 결제정보를 문체부·한국관광공사에 정보전달에 필요한 통신망 구축 필요
 - (중기부) 업종단체(대한숙박업중앙회)를 통한 영세 숙박업 현황 파악, 업종단체를 통한 사업 홍보

2

소상공인(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숙박업종 개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통계청

■ 관련법령 : 외국인고용법,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 현황 및 문제점

- '23년 5월 법무부에서 숙박업 고용난 해소를 위해 F4비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법무부 고시

(F-4)에는 그 활동 범위를 서비스 원으로 제한

- 서비스원에서 청소인력은 제외되어 일부 인구감소지역은 특례로 허용하였으나, 숙박업은 비자 취업확대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현행 규정 및 직업분류 체계 상 재외동포(F-4)는 오직 ‘숙박업소 객실 청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목적만으로는 숙박업소에 취업할 수 없음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하로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대분류로 묶어두고 있는 산업분류 체계로 인해 일부 숙박업 경영자는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 개선의견

- 숙박업계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행 법률에 정한 외국인 근로자 허용범위 확대 필요
 - 해당 종류에 “[제외] 모텔 등 소상공인 업종의 숙박업”을 명시
 - 현재 재외국민동포(F4 비자) 허용에서 E9(비전문취업자) 비자까지 확대 필요
- 숙박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편 필요
 -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하로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대분류로 묶어두고 있는 산업분류 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 필요

3 게임텔 불법 영업 근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현황 및 문제점

-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PC를 설치하고 고사양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텔’이 성행하고 있으나 불법임에도 신고가 들어와도 처벌이 없고 단속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현실

구분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다목·제6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가. 5대 이하	1)「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대형마트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 이하	1)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처는 더욱 많은 게임텔을 양성시켰고 PC방 업계는 불법적인 게임텔에 의해 사회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사멸하고 있음

- 이러한 반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데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고 그러한 사이에 숙박업계는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

■ 개선의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취해 불법 게임텔의 무단 게임제공업 영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명확한 단속 메뉴얼 마련

4 소상공인 여행사 경영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신용대출 지원 후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용대출 지원정책을 많이 이용하였음
– 2023년 하반기부터 거치기간 만료로 거치기간 연장이 안 될 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신용불량자로 이어질 수 있음
- 홈쇼핑, 플랫폼업체, SNS 등에서 거대 여행플랫폼업체 등이 영업업무시장을 잠식함으로써 2만여 소상공인 여행사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
- 여행사를 통한 관광의 경우 계약 전후 상담을 위해 소상공인 여행사가 고객 응대를 하는 구조이나, 중도 취소 발생 시 취소수수료는 본사가 모두 받음

■ 개선의견

- 중기부 소상공인 신용대출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상공인 여행사 신용대출상품 거치기간 연장 요청
- 홈쇼핑, 플랫폼업체, SNS 등에서 여행상품 판매제한 요청
- 중도취소 발생 시 취소자에 대한 상담수수료 적용 등 대리점 여행사 상담수수료 제도화(약관 등) 마련

5 여행업자 자격 요건 강화 및 허가제도 도입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13조

■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진흥법상 자격요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격, 무면허 여행업자 (관광버스업자, 산악회, 카페동우회,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여행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해 기획여행을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
 - 2024년 8월기준 전체 관광 업체 약 41,000여개 중 여행업 업체 21,000여개로 50% 이상이 차지하고. 그 중 중소 여행사가 약 90%
- 현재 국·내외 OTA 플랫폼업체,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판매, 무면허 자격업체의 모객행위 등 정상적인 여행업을 등록 및 허가를 받고 판매 운영 중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무허가 업체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2023. 8. 8.>

■ 개선의견

- 국외 여행업은 자격요건이 필요한 전문직종으로써, 여행업은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전환할 필요
- 불법적인 여행알선자 법 제도화 개선 및 관리 필요
 - 관광버스사업자, 온라인카페, 카카오톡, 밴드 등 불법 영업행위자들의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 및 벌금)부과하고 상시적으로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6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 현황 및 문제점

- 사진은 3D프린팅, VR·AR·빅데이터 등의 원천기술로 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산업이지만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문화산업의 중심에 있는 사진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는 위기 봉착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사진 분야에 대한 지원은 타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실정인어서, 사진발전에 대한 개별법 제정을 통해 사진진흥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사진산업 발전의 필연적 요구라 할 수 있음
 - 2015년 1차 발의 (박맹우 의원 등 12인) 법안소위 통과 후 회기종료로 폐기

- 2019년 7월 12일 전국 프로사진협회 및 각계 사진전문가 500여명 참석한 국회 공청회 개최

■ 개선의견

- 창의적 사진상품 개발과 인재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산업 및 사진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별도 제정*

* 영화, 만화, 디자인, 공예, 출판문화, 콘텐츠 등 개별 진흥법 既제정

【사진진흥법 제정】

사진 전문가가 주도하는 사진산업생태계 설계 필요

사진관련 산업분야와 미래기술이 융합하는 연구개발 사업 필요

사진을 천직으로 갖고자 하는 인재들을 적극 육성 지원하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사진산업의 국내 시장 확장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와 시범사업 추진

기존 사진전문가 시장의 보호 및 확장을 위한 특별지원

7

대리운전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의 근거 법령 오류에 따른 실태 조사 및 변경 요청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대리운전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대리운전업의 실태조사 없이 기존 플랫폼 업종과 같이 적용하여 대리운전업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뒤늦게 현장 상황을 파악,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 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3년 12월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음
 - 고용·산재보험료 원천징수 주체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고용보험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산재보험은 ‘플랫폼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고, 플랫폼 운영자인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제3의 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용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를 플랫폼사로 정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제공사’로 플랫폼사로 정의할 수 없음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납부의 권리를 박탈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보험료 징수법]

1. 부과의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 내지 21, 시행령 83조의 5 내지 12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 내지 10, 시행령 104조의 11 내지 17

2. 원천징수 '주체'에 관한 근거 법령

산재보험 : 플랫폼 운영자(보험료 징수법 제48조의 3 내지 7, 시행령 제56조의16)

고용보험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보험료 징수법 제48조의 3 내지 7, 시행령 제56조의7)

■ 개선의견

- 대리운전업 고용 산재보험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으로 해당 산업에 맞는 법령으로 개선 필요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로 법령 개선까지 대리운전업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 유보 또는 경감 혜택 제공
- 기타 건의사항
 - (대리운전 기사 셔틀 도입) 현재 대리시장에는 대리운전 기사 불법 셔틀이 성행하고 있음. 불법 운영으로 셔틀을 이용 시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대리운전 기사 셔틀을 도입의 필요성은 오지, 외지 등의 콜이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대리운전의 소비자 이용 비용의 안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대리운전 법제화) 대리운전산업에 대한 법이 없어 대기업, 소상공인, 종사자 모두가 무분별한 시장 안에서 위태롭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음. 대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가 상호 상생하여 건강한 대리운전 산업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리운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
 - (공적 관제 프로그램)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이 사용하는 관제프로그램은 대기업이 대부분 인수하여 콜의 95%이상 장악하고 있음. 이는 특정 산업의 독과점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타 산업 중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소비자의 불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적 프로그램 사용으로 독과점을 분산

8 대리운전업계 대기업(티맵)의 현황 및 문제점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6월 대리운전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인 티맵모빌리티에게 제한적 사업 운영을 권고함
- 그러나 티맵모빌리티는 권고사항 중 하나인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를 위반하며 고객 및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프로모션 진행

- 고객에게 과도한 마일리 적립 이벤트 및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사콜 수행 시 2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프로모션 진행으로 중소기업 대리운전 콜 수행을 어렵게 함
- 중소기업 대리운전 수익 기반으로 할 수 없는 대기업의 프로모션이 지속될 경우 기존 중소기업자의 사멸로 이어져 결국 대기업 독과점 산업이 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 업계 1위 로지소프트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개선의견

- 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인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 마케팅 즉각 중단 요청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며 대리운전산업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법제화 필요

9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의무화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 PC방 업주는 정부 정책 및 PC방 운영에 반드시 숙지 해야 할 정보를 습득할수 있는 기회는 단순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불과함
 -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내용이 지역마다 각각 다르고 교육 또한 임의규정으로 인해 의무 교육이 아니어서 예산 및 담당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교육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음
 -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PC방 업주가 떠안고 있으며 심지어 범죄자로 전락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 PC방은 대표적 영세소상공인으로써 PC방 관련 법률과 관련 정부 부처 및 규제 사항들이 많고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반드시 필요

■ 개선의견

-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의무화
 - PC방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에게 수시로 변화하는 정부 정책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 및 PC방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숙지하여 PC방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

10 전통복식 및 전통문화 공간지원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 **관련법령** : 문화기본법 제7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2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고유의 민속 문화유산 이자 전통 복식인 한복이 국적 불명의 옷들로 난립, 한국의 고유한 풍속·의복문화 및 한복 제작 인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

■ **개선의견**

- 전통 한복 기준 제시와 전통문화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 고증 복식 전시관, 홍보관, 체험교육관, 침선교육관 등 개관 요청

11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및 루시법 철회 요청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7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현황 및 문제점**

- 반려동물연관산업은 양육증가, 동물지위 상승 등으로 시장이 확대·고급화되는 추세
-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 되고 있으나, 반려동물산업관련법 부재
 - 양육 가구수가 '21년 기준 15%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양육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위성곤의원 등 12인 발의, '23.11.23.) 주요 내용으로 6개월 이하 개·고양이 판매금지,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의 금지 등이 있음
 - 생후 6개월 이후 분양은 유대감형성 및 교육에 어려움으로 파양과 유기이 난무하고 개체교육 및 예방접종 등 큰 문제 발생
 - 경매금지는 반려동물산업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중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등 동물보호단체'카라'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입법임
 - 동법에 생산자이력카드제, 영업자준수사항 등이 강력하게 시행중

■ **개선의견**

- 종합적·체계적 산업육성을 위한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 일부 몰지각한 사업장의 일탈로 전체산업의 문제로 보는 것은 시정

12 반려견 등록시스템 개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3항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반려견등록시스템은 RFID인식칩을 수의사만 반려견에 주사삽입
 - 견주의 호응도 결여로 등록율이 낮을뿐아니라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개선책 필요

■ 개선의견

- 기존등록방식인 무선식별장치 DB와 비문인식 등을 연계하는 기술이 있으므로 추가적 시범사업 실시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시스템을 네이버포털, 일반펫샵 등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3항 개정요청
 -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한다.

13 동물보호법 중 위탁관리업 개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

■ 현황 및 문제점

- 손님이 일시적으로 위탁(호텔,훈련,미용,진료 등) 하였으나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동물을 찾으러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현행 법률상 동물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유기로 인정되기 어려운 현실이며, 경찰서 또는 시, 군, 구청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움
 - 이용요금, 사료비용 등은 민사적 문제사항이라 고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민사소송으로 필요한 만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사실상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가 아닌 위탁관리시설에 맡겨진 동물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필요함
 - *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함, [동물보호법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

■ 개선의견

- 동물보호법 제2조를 제2호(소유자등) 및 제3호(유실·유기동물)를 개정의 필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 위탁사업장에 약정한 기간 만료 10일 경과, 이용료 연체 등의 조건 부합 시 유기로 인정하고 위탁자는 동물유기로 처벌 필요

14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완화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제34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노래방에 손님이 술을 몰래 가져와서 마시더라도 업주가 처벌 받도록 되어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음
 - 일부 손님들은 주변 편의점이나 마트를 이용해서 술을 사 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 등이 발생
 -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의 가방이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가 없어 술을 몰래 가져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개선의견

- 처분을 완화하거나 삭제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지에서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 과징금변경처분으로 법 개정

Chapter 1.

5대 아젠다 25대 핵심과제

Chapter 2.

소상공인 분야별 85대 정책과제

KFME 소상공인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행일 2025년 4월

발행처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5층

TEL) 1522-0500 | www.kfme.or.kr